선진국의 건설보증제도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이 의 섭

1996. 12.

연구진

이 의 섭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

이 선 희 연구원

머리말

주로 계약에 의해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보증제도는 건전한 건설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증이 존재하는 경제적 이유는 거래 당사자간의 채무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적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는데, 보증인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담보하도록 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건설시장 대외개방을 맞아 국내의 제도와 관행을 국제 관례에 부합하게 개선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을 도입하는 등 공공공사 이행보증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건설보증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은 금융시장 및 건설 시장의 대외개방, 급격한 건설업체 도산 등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 고, 이를 통한 보증기관으로서의 건전성 및 타보증기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 이 있다.

또한, 국내건설회사는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선진국 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선진국 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보증제도를 포함한 건설관련 제도와 관습을 이해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진국 보증제도에 관한 관심이 정책담당자, 보증기관 종사자, 건설회사 실무자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건설보증제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정책담당자의 정책 개선 및 보증기관 종사자의 업무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건설업계 실무자에게는 미 국과 일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본 조사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본 조사가 정부의 정책담당자, 국내 보증기관 종사자 및 건설업체 실무자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본 조사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한 이의섭 박사와 이선희 연구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1996. 12.

韓國建設產業研究院

院長洪性雄

차 례

<요 약>	·· 1
I. 서론 ······	·· 1
1. 조사동기	·· 1
2. 보증의 기본개념	·· 1
II. 미국의 건설보증제도	4
1. 입찰보증증권(Bid Bond) ······	4
2.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 ······	
(1) 이행보증증권의 의무화	
(2) 보증회사의 선택방안	
3. 지불보증증권(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	6
(1) 지불보증증권의 청구권자	
(2) 청구절차	
(3) 소송을 제기할 권리	
(4)보증금액	
4. 선금급보증과 하자보수보증증권	
5. 보증증권의 기능	
6. 보증증권 인수기관	9
7. 보상 약정	
8. 보증채권자(발주자)의 의무	
9. 보증브로커	
10. 보증심사	12
11. 보증한도	12
12. 공사진척보고서(Contract Status Report) ·······	13
13. 보증요율	
III. 일본의 건설보증제도	
1. 공사이행보증제도 ·····	
(1) 회계법령 등의 공공공사 이행보증 규정	
(2) 일본의 새로운 이행보증제도	
2. 전불금 보증 제도	
(1) 전불금 보증	
(2) 전불금 보증제도의 연혁	
(3) 전불금 보증제도의 운영 체계	
(4) 전불금 보증사업회사	
(5) 전불금보증회사의 보증한도	
(6) 보증요율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차 례

[丑	I -1] 건설보증의 3자 관계 ·····	.2
	II-1] 지불보증증권의 청구권자 ······	
[丑	II-2] 보증증권발행의 절차 ·····	11
[丑	II-3] 보증증권 발행의 심사 내용	12
[翌	II-4] 미국 보증회사의 공사 등급	14
[丑	II-5] 미국의 보증증권 보증수수료율(예시)	15
[丑	III-1] 일본 회계법령에서의 이행보증 관계규정 개요 ·····	17
[翌	III-2] 새로운 이행보증체계의 개요 ·····	19
[丑	III-3] 이행보증증권에 의한 보증	21
[丑	III-4] 이행보증증권 인수 심사방법	22
[翌	III-5] 손해보험회사의 공사등급(예시) ·····	23
	III-6] 이행보증증권 기본보증 수수료율(예시)	
[丑	III-7] 일본 은행보증의 과정 ·····	25
[丑	III-8] 전불금 보증의 운영체계 ·····	28
	III-9] 일본의 전불금보증주식회사 개요	
[丑	III-10] 전불금 보증요율 ·····	29

I. 서론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건설보증제도에 관한 소개는 일부 있었지만 체계적인 정리의 미흡 등으로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상태여서, 정책담당자, 보증기관 종사자, 건설업체 실무자 등이 미국과 일본의 건설보증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건설보증제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정책담당자의 정책 개선 및 보증기관 종사자의 업무개선에 참고가 되도록하고, 건설업계 실무자에게는 미국과 일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증은 보증채권자(Obligee; 건설업 원도급 계약의 경우 발주자)에 대한 주채무자 (Principal; 건설업의 경우 시공업자)의 채무를 제3자인 보증인(Surety)이 주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은 주채무가 존재함으로써 성립되며 보증의 내용은 주채무와 보증약정에 의해 결정된다.

Ⅱ. 미국의 건설보증제도

미국 건설보증은 슈어티보증증권(Surety Bond)의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입찰시에 입찰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입찰보증증권(Bid Bond),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발주자와 계약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과 지불보증증권(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하자보수보증증권(Maintenance Bond)과 선급금보증증권(Advance Payment Bond)이 가끔 활용되고 있다.

1. 입찰보증증권(Bid Bond)

입찰보증증권은 응찰자의 성실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입찰에 낙찰되면 규정된 기간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후술하는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권이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입찰조건에 맞는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입찰보증증권을 발행한 보증회사는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보통 발주자가 입은 손해는 응찰자의 응찰가격과 차상위 응찰가격(the next lowest bid price)의 차이가 된다.

2.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

이행보증증권이란 계약자(주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Surety)가 원래의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행하거나 보증금액(Bond Amount)을 한도로 보증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보증이다.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액은 대개 계약 금액의 100%이다. 연방정부 발주공사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100%이고 일부 주(State)에서는 50%이다(예 캘리포니아 주)

3. 지불보증증권(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지불보증증권이란 공사에서 발생하는 임금과 자재 대금을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증권이다. 지불보증증권은 시공업자(주채무자)가 발주자(보증채권자)에게 계약시에 제출한다. 밀러법에 의하여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10만 달러 이상의 공사에는 이행보증증권과 지불 보증증권을 의무화하고 있다.

발주자 측면에서 보면 지불보증증권은 원도급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대금지급을 보증하여 발주자에게 이중으로 하도급 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발주자의 대금 지급의 증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4. 선금급보증과 하자보수보증증권

선급금 보증증권(Advance Payment Bond)이란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시공업자가 그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손실분에 대한 보증을 하 는 증권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이용된다.

하자보수보증증권(Maintenance Bond)이란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단순한 기능과 자재의 결함(Defect in Workmanship and Material)으로 인한 손실을 보증하는 증권으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행보증증권에 포함되고,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 경우에는 발주자가 별개의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요구한다.

5. 보증증권의 기능

보증회사가 공사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건설업자에게 보증증권을 발행하면 보증회사는 치명적 손해를 입게되므로 보증회사는 보증증권을 신청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보증심사를 한 후에 건설보증증권을 발급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건설보증증권은 계약자(시공업자)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을 하고 있다.

III. 일본의 건설보증제도

일본의 건설관련 보증제도는 공사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와 전불금(우리나라의 선급금) 보증제도가 있다.

1. 공사이행보증제도

일본의 공공공사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는 1995년까지 주로 공사완성보증인 제도였다.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시공연대보증인 제도와 흡사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을 한 시공업자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시에 미리 정해진 공사완성보증인이 본래의 시공업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성를 보증하는 역무적 성격의 보증제도이다. 이와 같은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일본의 공공공사 이행보증 제도의 개선은 기존의 회계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던 금전적 보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완성보증인 제도가 가지고 있 었던 역무적 성격의 보증은 이행보증증권를 도입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금전적 보증수단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체계가 불충분한 경우와 시설의 공용개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의 보완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선택에 의해서 역무적 보증인 이행보증증권을 건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개 선되었다.

(1) 이행보증증권

이행보증증권은 보증회사가 시공업자(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보증금액 한도내에서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발주자(채권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거나 건설업자를 대신해서 공사 완성을 보장하여 주는 보증이다.

(2)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은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건설업자의 계약불이 행시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손해보험회사가 발주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보 증하는 금전적 보증 수단이다.

(3)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증

1)은행의 보증

은행의 보증은 은행의 채무지급보증 업무의 일환으로, 건설업자와 은행이 체결하는 보증위탁계약 및 은행과 발주자가 체결하는 채무보증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 전불금 보증회사의 계약보증

건설업 전불금 보증을 전업하던 전불금 보증회사에게 「계약보증」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이행의 금전보증이 추가되었다.

2. 전불금 보증 제도

일본의 전불금 보증이란 우리나라의 선급금 보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공공사의 발 주자가 전불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전불금에 대한 손실 부분을 대신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수급인이 공사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보증회사가 발주자에게 전불금의 손실 부분을 지불하거나, 발주 자가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을 때는 당 해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전불금의 손실부분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I. 서론

1. 조사동기

우리나라의 건설보증제도는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주식회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설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을 도입하는 등 정부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건설회사는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선진국 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진국 보증제도에 관한 관심이 정책담당자, 보증기관 종사자, 건설회사 실무자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건설보증제도에 관한 소개는 일부 있었지만 체계적인 정리의 미흡 등으로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상태여서, 정책담당자, 보증기관 종사자, 건설업체 실무자 등이 미국과 일본의 건설보증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건설보증제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정책담당자의 정책 개선 및 보증기관 종사자의 업무개선에 참고가 되도록하고, 건설업계 실무자에게는 미국과 일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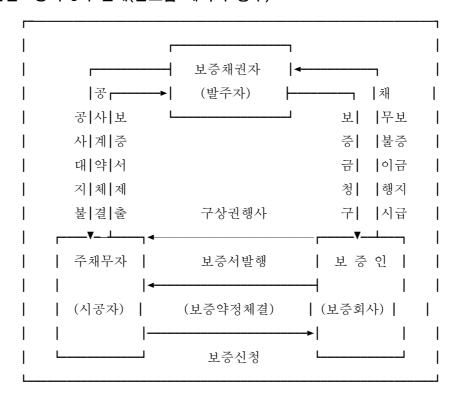
조사 내용의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을 두고자 제I장 제2절에서는 보증의 기본개념과 용어를 설명하고, 제II장에서는 미국의 건설보증제도, 제III장에서는 일본의 건설보증제도를 소개한다.

2. 보증의 기본개념

보증은 보증채권자(Obligee; 건설업 원도급 계약의 경우 발주자)에 대한 주채무자 (Principal; 건설업의 경우 시공업자)의 채무를 제3자인 보증인(Surety)이 주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은 주채무가 존재함으로써 성립되며 보증의 내용은 주채무와 보증약정에 의해 결정된다(건설보증의 이들 3자관계에 관해서는 [표 I-1] 참조).

보증이 존재하는 경제적 이유는 거래당사자간의 채무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는데, 보증인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담보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적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표 | -1] 건설보증의 3자 관계(원도급 계약의 경우)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는 것으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보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계되는 자가 보험자(the Insurer)와 보험계약자(the Insured)의 두 사람인데 비하여 보증증권은 계약관계자가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세 사람이다1).

둘째, 보험은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체결하나, 보증에 있어서는 사고 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세째,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관이 물적, 인적 담보를 정구하는 것은 보증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나, 보험의 경우는 본질상 담보를 정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보증은 보증인이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납입금에 대해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상권이 존재하나 보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2).

네째, 보험은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확률의 추정이 가능하나 보증은 대수의 법칙 적용이 불가능하여 사고에 관한확률의 추정이 곤란하다.

¹⁾ 물론 제3자를 피보험자(Beneficiary)로 하는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경우에도 3인이 관계된다.

²⁾ 물론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초기공제제도(Initial Deduction)를 두어서 손해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보증은 본질적으로 채권담보의 한 형식이나 보험은 위험분산의 방식이다. 보험의 본질은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전에 있으므로 보험료는 손해보전에 대한 대가이다. 이에 반해 보증증권의 본질은 신용의 공여(Credit Extention)에 있으므로 보증료는 신용공여의 대가이다.

그러나 보증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를 보전하는 책임을 지므로 손해보전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보험과 보증에는 위와 같이 다른 점이 있으나 보증은 사고 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를 보전하는 책임을 지는 보험적인 측면과 신용공여의 기능이 모 두 존재 한다3)

³⁾ 건설공제조합(1980), pp. 235-236와 Remmen (1989), pp. 7-8 참조.

II. 미국의 건설보증제도

미국 건설보증은 슈어티보증증권(Surety Bond)의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다4). 즉, 입찰시에 입찰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입찰보증증권(Bid Bond),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발주자와 계약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과 지불보증증권(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하자보수보증증권(Maintenance Bond)과 선급금보증증권(Advance Payment Bond)이 가끔 활용되고 있다.

1. 입찰보증증권(Bid Bond)

경쟁입찰의 경우 공공 발주자 및 민간 발주자는 입찰시 입찰자에게 입찰보증(Bid Security)을 의무화하고 있다⁵⁾. 일부 발주자는 입찰보증으로 은행의 보증수표(Certified Check)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찰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찰보증증권은 응찰자의 성실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입찰에 낙찰되면 규정된 기간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후술하는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권이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입찰조건에 맞는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입찰보증증권을 발행한 보증회사는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보통 발주자가 입은 손해는 응찰자의 응찰가격과 차상위 응찰가격(the next lowest bid price)의 차이가 된다(입찰보증증권 양식은 부록2: 미국의 건설보증증권 양식 참조)6).

발주자는 보통 응찰가격(Bid Price)의 5~10%(연방정부 발주공사는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보증증권의 보증금액으로 요구한다.

2.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

이행보증증권이란 계약자(주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Surety) 가 원래의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행하거나 보증금액(Bond Amount)을 한도로

⁴⁾ 슈어티보증증권은 계약 등으로 생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Surety)이 담보한다는 내용의 문서(Written Instrument)를 말하고, 신용보증증권(Fidelity Bond)은 피고용인이 정직하지 못함 으로써 고용주가 받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문서이다.

⁵⁾ 수의계약(Negotiated Contract)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대개 입찰보증증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⁶⁾ 이와 같이 발주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만을 배상하는 입찰보증증권을 보상형 입찰보증증권 (Indemnification Bid Bond)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증금액 전액을 배상하는 위약금형 입찰보증 증권(Forfeiture Bid Bond)도 있다. Welch et al (1992), Vol. II, pp. 299 - 301 참조.

보증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보증이다?).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액은 대개계약 금액의 100%이다. 연방정부 발주공사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100%이고 일부 주 (State)에서는 50%이다(예 캘리포니아 주)

(1) 이행보증증권의 의무화

공공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공업자는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발주자에게계약시 제출하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밀러법 (Miller Act)의 규정에 의해 10만 달러® 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되었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밀러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률[통칭 작은 밀러법(Little Miller Act)]에 의해 시공업자는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의무적으로 공사계약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대개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지않고,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10).

(2) 보증회사의 선택방안

건설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이행보증증권에 의한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주채무자가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둘째, 발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여야 하고, 세째, 발주자가 주채무자의 권리를 중단시켜야 하며, 네째, 발주자는 계약상의 발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¹¹⁾¹²⁾.

1) 원래의 건설회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계약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공사를 완성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선택의 경우 재정지원

⁷⁾ 이행보증증권의 주채무자는 원도급계약(Prime Contract)일 경우는 원도급자(Prime Contractor)이고, 하도급계약(Subcontract)일 경우는 하도급자(Subcontractor)이다. 보증채권자는 원도급계약(Prime Contract)일 경우는 발주자(Project Owner)이고, 하도급계약일 경우는 원도급자(Prime Contractor)이다.

^{8) 1935}년 밀러법 제정 당시에는 2만5,000 달러 이상의 공사에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의무화하여으나, 1996년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공사로 개정되었다.

⁹⁾ 각주의 건설보증증권에 관한 법률은 National Association of Surety Bond Producers(1996)의 Bonds on Public Works 참조.

¹⁰⁾ Welch et al (1992), Vol. I, p. 126 참조.

¹¹⁾ 이하의 설명은 원도급계약일 경우이고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증권일 경우는 발주자는 원도급자, 건설업자는 하도급자로 해석하면 된다.

¹²⁾ 미국 이행보증증권의 양식은 발주기관이나 보증회사에 따라 다양하다.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의 양식과 민간공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의 표준 양식은 부록1: 미국의 건설보증증권 양식 참조.

은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방법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기 위하여 대출보 증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 2) 보증회사가 다른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완성하는 방안으로서 추가되는 비용(계약금액의 증가)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보증회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발주자와 별도로 인수약정(Takeover Agreement)을 체결하는데 이 약정에는 계약이행시기, 공사 대금 지불조건, 자재 공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부록2: 발주자와보증회사간의 인수약정서 참조). 이 보증회사와 발주자와의 계약이 기록상으로는 원도급계약(Prime Contract)이 되고, 보증회사와 건설회사와의 계약은 하도급계약(Subcontract)이 된다.
- 3) 발주자에게 새로운 건설업자를 선정하게 하고 발주자가 건설업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으로 재발주에 드는 사무비용과 계약금액의 증가분은 보증회사가 보증금액 한도내에서 부담한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책임을 면하나 발주자는 새로운계약에 대한 보증을 보증회사에 요구하므로 보증회사는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공사계약에 관여하게 된다.
- 4) 보증회사가 위에 적시된 3가지 방안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발주자가 프로 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다. 보증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클레임(Claim)을 수용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를 판단할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 불충분할 경우에 선택한다. 이 경우 비용의 증가와 손해에 대해서 발주자와 협상하거나 발주자에 대항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이 경우의 보증회사의 채무한도는 보증금액이다13).

3. 지불보증증권(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¹⁴⁾

지불보증증권이란 공사에서 발생하는 임금과 자재 대금을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증권이다(지불보증증권 양식은 부록1: 미국의 건설보증증권 양식 참조). 지불보증증권은 시공업자(주채무자)가 발주자(보증채권자)에게 계약시에 제출한다. 밀러법에 의하여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10만 달러 이상의 공사에는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의무화하고 있다¹⁵⁾. 민간공사에서는 하도급업자나 자재공급자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시

¹³⁾ 보증회사가 채무보증서의 액면가에 의한 채무한도는 전통적으로 지켜져 온 것이었는데, 보증회사가 4)번째 선택을 한 경우의 판례에서 이러한 관례가 깨짐으로써 AIA Document 312에서는 채무한도를 명시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elch et al. (1992, Vol. I, pp. 129-132)을 참조.

¹⁴⁾ 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를 간단히 Payment Bond 또는 Labor and Material Bond 라고 하다.

^{15) 2}만 5,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지불보증수단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도급 대금과 자재대금에 대해서 지불보증증권,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3자간의 조건부 계정에 관한 합의서(Tripartite Escrow Agreement), 예금증서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시하는 2개 이상의 방안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다(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of 1994 (Public Law 103-355).

공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 대금지급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Michanic's Lien)을 행사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연방정부 재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자와 자재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그러므로 유치권에 대한 대안으로 연방정부 발주공사에 대해서 지불보증증권을 의무화하였다.

발주자 측면에서 보면 지불보증증권은 원도급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대금지급을 보증하여 발주자에게 이중으로 하도급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발주자의 대금 지급의 증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1) 지불보증증권의 청구권자

지불보증증권에 의한 대금 지급 청구권자(Claimant)는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자재 및 노동 공급자, 하도급업자, 그리고 그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2차하도급업자와 자재 및 노동 공급자이다([표 II-1] 참조)16). 지불보증증권의 보증채권자(Obligee)인 발주자는 대금 지급 청구권자는 아니지만 지불보증증권의 수혜자이다. 그 이유는 지불조증증권으로 인하여 발주자는 원도급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자나 자재 및 노동 공급자가 건축물 등 프로젝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위험에서 벋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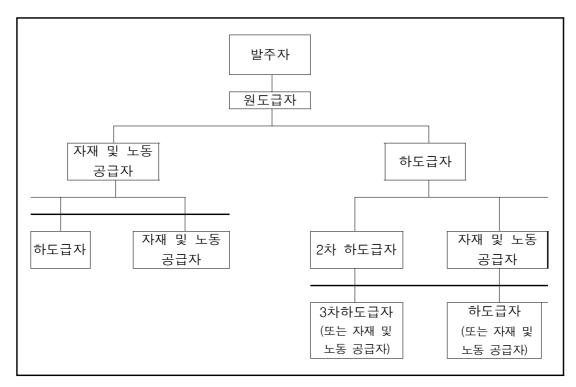
(2) 청구절차

미건축가협회의 지불보증증권 양식에 의하면 지불보증증권에 의하여 청구권자가 대금 청구를 하는 절차는 원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와 하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는 상이하다. 원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청구권자는 청구액을 명시하여 지불을 요청하는 취지의 청구서(Notice)를 보증회사와 발주자에게 송부하면 된다.

그러나, 원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하도급자와 계약을 맺은 청구권자는 90일이내에 청구액, 노동 또는 자재를 공급한 기관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우선 원도급자 및 발주자에게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후 30일 이내에 원도급업자가 청구액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에 같은 종류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서를 송부한다. 그러면 보

[표 II-1] 지불보증증권의 청구권자

¹⁶⁾ Welch et al (1992), Vol. I, pp. 134 참조.



주: 진한 선 이상이 지불보증증권에 의한 청구권자이고, 그 이하는 청구권자가 아니다.

증회사는 4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 권자에게 통지하고, 청구권자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게 주선하여야 한다.

(3) 소송을 제기할 권리

밀러법에 의하면 지불보증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불보증증권에 의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작업 또는 자재공급이 수행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청구권자는 마지막 작업 또는 자재를 공급한 날로 부터 90일에서 1년 이내에 보증회사는 상대로 지불보증증권에 의한 소송을 보증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은 1차하도급업자와 자재공급자는 소송 제기의 전제조건이 없으나 원도급업자와 계약을 맺지 않고 하도급자와 계약을 맺은 청구권자는 위에서 적시한 청구절차를 수행한 후에만 지불보증증권에 의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보중금액

보증금액은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연방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지불보증증권의 보증금율은 공사계약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공사계약 금액이 10만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하인 공사는 공사계약 금액의 50%이고, 100백만 달러에서 500백만 달러 미만 공사는 계

약금액의 40%, 500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250만 달러이다17).

4. 선금급보증과 하자보수보증증권

입찰보증증권, 이행보증증권 및 지불보증증권 이외에도 선급금보증증권(Advance Payment Bond), 하자보수증권(Maintenance Bond)이 있다. 선급금 보증이란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시공업자가 그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손실분에 대한 보증을 하는 증권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이용된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금보증증권을 의무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¹⁸⁾(선급금보증증권 양식은 부록1: 미국의 보증증권 양식 참조).

또한 하자보수보증증권(Maintenance Bond)이란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단순한 기능과 자재의 결함(Defect in Workmanship and Material)으로 인한 손실을 보증하는 증권으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행보증증권에 포함되고,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별개의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요구한다(하자보수보증증권 양식은 부록1: 미국의 보증증권 양식 참조).

5. 보증증권의 기능

보증회사가 공사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건설업자에게 보증증권을 발행하면 보증회사는 치명적 손해를 입게되므로 보증회사는 보증증권을 신청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보증심사를 한 후에 건설보증증권을 발급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건설보증증권은 계약자(시공업자)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을 하고 있다¹⁹⁾.

6. 보증증권 인수기관

미국에서 보증증권을 인수하는 기관은 보험회사인데, 연방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연방 재무성(U.S. Department of Treasury)이 검증하여 인정한 보증회사에 의한 보증만이 유효하다. 매년 연방재무성 슈어티 보증증권(Surety Bond) 담당부서(The Surety Bond

¹⁷⁾ 각주의 건설보증증권의 보증금액에 관한 자료는 National Association of Surety Bond Producers(1996)의 Bonds on Public Works 참조.

¹⁸⁾ 연방조달규정(FAR) 28부. 105-1 참조.

¹⁹⁾ 물론 건설보증증권 제도가 사전자격심사를 대행한다고 해서 모든 발주기관이 사전자격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자격 심사제도가 없으나 일부 주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서는 발주자의 사전자격심사가 있다. 또한 보증 회사도 발주기관의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건설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건설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Branch of the Financial Management Services of the United States Treasury)는 보증회사들에 대한 재정상태를 검토하여 연방정부 발주 공사계약의 보증이 가능한 보증회사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의 보증회사에 대하여 1건 보증에 대한 한도와 재보험을 할 수있는 회사(Admitted Reinsurer)의 목록 및 1건 공사에 대한 재보증한도를 간행물(Department Circular 570)에 게재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rar)'에 수록하며, 또한 미국의 보증회사는 보증을 제공하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0).

7. 보상 약정

보증증권을 발급할 때 보증회사는 계약 불이행시 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시공업자와 보상약정(Indemnity Agreement)을 맺는다. 시공업자가 법인(Corporation)인 경우는 임원, 대주주 및 그들의 배우자에게 개인 자격으로 보상 약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²¹⁾. 그리고, 은행의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정부채권(Government Bond) 등을 담보(Collateral)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개별 공사에 대해서 보상 약정을 맺는 경우도 있고, 향후 공사에 대해서 일괄보상약정(General Indemnit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일괄보상약정 양식은 부록3: 일괄보상약정 양식 참조).

8. 보증채권자(발주자)의 의무

보증은 3자가 관련된 계약이므로 보증채권자인 발주자는 보증회사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맺은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 함은 물론 보증회사에 대해서 소정의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면 채권자(발주자)에 의한 계약변경시보증회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가 끝난 후보증회사에게 시공업자의 공사수행에 관한 평가 및 최종의 계약변경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향후 보증회사가 시공업자를 평가하는 자료로축적되고, 최종의 계약변경사항은 보증요율을 정산하는 데 사용된다22).

9. 보증브로커

보증회사는 보증브로커를 매개로 보증을 제공하므로 건설업자들이 주로 접촉하게 되는 상대는 보증브로커이다. 건설업자는 브로커를 통하여 보증회사를 소개받고 개별안건에 대한 증권 발행도 브로커를 통하여 받는다. 브로커는 복수의 보증회사, 복수의 건설업자

²⁰⁾ 보증회사 1건에 대한 보증한도는 보증회사의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의 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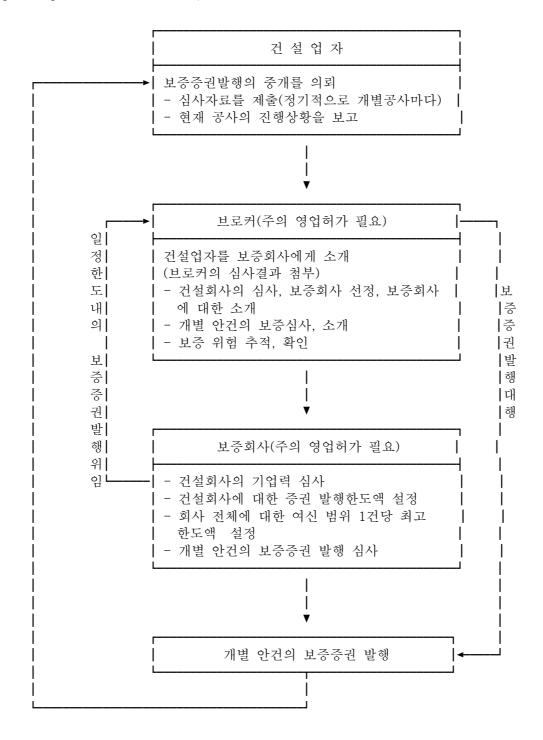
²¹⁾ Welch et al (1992), Vol. I, p. 261 참조.

²²⁾ Clough and Sears (1994) p. 188 참조.

와 거래 관계를 갖고 있으나 건설업자는 통상 1개사의 브로커만을 중개자로 거래를 한다.

보증회사는 브로커로부터의 소개 내용을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보증대상 기업으로 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브로커의 의견을 중시한다. 보증회사는 상당한 정도까지 증권발행권을 위임하고 브로커가 보증회사에 대신해서 증권에 서명하고 발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표 II-2] 참조).

[표 Ⅱ-2] 보증증권발행의 절차



10. 보증심사

보증회사와 보증브로커 회사는 기본적으로 3C[Character(신인도), Capacity(시공능력), Capital(자금력)]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증증권 발행 여부를 결정하고 보증한도 및 요율을 결정한다([표 II-3] 참조).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및 소규모 토목공사의 경우는 자금력이 평가의 중요요소이지만 대형 토목공사의 경우는 시공능력이 중요시 된다.

[표 Ⅱ-3] 보증증권 발행의 심사 내용

심 사 항 목	심 사 사 항
Character(신인도)	과거 시공한 공사의 종류, 규모, 수, 시공장소, 시공체제, 발주자의 만족도, 하청업자 및 자재공급자에 대한 지불기록, 과거 공사에 대한 설계자, 하청업자, 자재공급자의 평판
Capacity(시공능력)	해당 공사의 시공체재(단독 시공인지 공동도급인지), 공사 계획, 장비 조달 계획, 해당공사를 담당하는 현장 소장, 주요 기술자의 능력과 경험, 본사의 지원조직, 공사비의 견적금액과 타당성
Capital(자금력)	회사 내용, 공인회계사에 의해 공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은행의 여신 한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재무정보

보증회사는 건설업자가 보증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역사, 결산보고서 등 재무제표(일 반적으로 과거 3년간), 과거의 공사 경력(과거 수년간의 주요공사), 현재 진행중인 공사, 회사간부의 이력서, 주요 주주 및 거래은행, 보유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 게 하여 회사내용을 세밀히 검토한 후 보증여부를 결정한다.

보증회사는 입찰보증증권(Bid Bond)을 발행하였더라도 입찰가격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해당업자의 입찰금액이 발주자의 예정가격과 두번째 최저가격보다 크게 하회하는 것과 같이입찰가격과 예정가격 산정에 잘못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발행한다.

11. 보증한도

보증심사 결과, 보증인수를 결정하면 개별 시공업자에 대해서 보증한도(Bonding Capacity, Bonding Line) 및 단일 공사에 대한 보증한도(Single Maximum Limit)를 결정한다. 개별시공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란 어느 시점에서 개별 시공업자가 보증받을 수 있는

공사의 최고 한도액으로서, 자본금과 유동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보증한도는 일반적으로 순유동자산(Working Capital) [유동자산(Current Asset) - 유동부채(Current Liability)]의 배수 및 자기자본(Equity)에 대한 배수의 2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³). 순유동자산에 대한 배수로는 10[~]20배내에서 결정되며, 자기자본에 대한 배수로는 10¹¹ 미만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침(Guideline)이다. 보증한도는 공사의 종류 및 크기, 건설회사의 재무상태의 다른 요인²⁴), 보상책임자(Indemnitor)들의 재정능력,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고려하고 있는 공사의 위험도 분석 등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²⁵).

12. 공사진척보고서(Contract Status Report)

보증회사 및 보증브로커는 정기적으로(통상 매3개월) 건설업자로 하여금 공사진척보고서(Contract Status Report)를 제출하게 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다. 개별공사에 대해서 문제점 및 문제가 될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보증회사는 새로운 공사를 보증할 경우 공사진척보고서를 분석하여 진행중인 공사총액(Backlog Amount)을 계산하여 보증한도를 초과하는지를 심사한다.

공사진척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보증회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각각의 공사에 대해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부록4: 공사진척보고서 양식 참조).

-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금액(Contract Price including Approved Change Orders)
- ·당초예상이윤(Original Estimate of Gross Profit)
- ·유보기성금이 포함된 수령금액(Total Amount Billed to Date including Retainage)
- ·지불비용(Total Costs incurred to Date)
- ·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Billing in Exces of Costs)
- ·완성되기까지 예상비용(Estimated Cost to Complete Remaining Work)
- ·수정된 예상이윤(Revised Estimate of Gross Profit)
- ·예상완공일(Expected Completion Date)

또한 당해 회계연도에 완성한 각각의 공사에 대해서도 최종공사금액, 당초예상이윤, 최종이윤 등이 포함된다.

²³⁾ 현재 진행중인 공사(Backlog, Work-on-hand)에 대한 순유동자산(Working Capital) 및 자기 자본(Equity)의 비율로 새로운 공사에 대한 보증 여부를 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예를 들어, 보증한도가 순유동자산의 20배라고 하는 것은 유동자산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사의 1/20, 즉 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²⁴⁾ 유동성과 자기자본 이외에 이윤에 관한 지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추세 분석 및 질적인 차이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²⁵⁾ Welch et al (1992), Vol. II, pp. 140 -141 참조.

13. 보증요율

보증증권의 보증요율은 공사의 등급(공사의 종류는 A1, A, B 및 기타의 4 등급으로 분류)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다. A-1급 공사는 매우 평이한 공사이고, A급 공사는 비교적 평이한 공사로서 지반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 B급 공사는 통상의 건축공사와 토목 공사이다([표 II-4] 참조). 따라서 보증요율은 B급 공사가 제일 높으며, A급, A-1급 순이다.

[표 Ⅱ-4] 미국 보증회사의 공사 등급

A-1	A	В	기타
잔해 운반장치 (Ash conveyors)	공항부지 지반공사	냉방시설 (Air conditioning)	잔해제거(Ash removal)
보일러 보수 (Boiler repairs)	(Airfield grading)	공항청사 건축 (Airport buildings)	교량 (Bridges)
운반설비 (Conveyors)	공항부지 포장공사	道水管(Aqueducts)	조립식 건물
문짝 (Doors)	(Airfield surfacing)	건물 건축 및 보수	(Buildings, prefabricated)
화재경보설비 (Fire alarms)	공항 활주로 공사	(Buildings, erection and repair)	배수 시설 (Culverts)
화재대피설비 (Fire Escapes)	(Airfield runways)	운하 (Canals)	해체 작업 (Demolition)
깃대 (Flag ploes)	알루미늄 벽널 (Aluminum siding)	댐 (Dams)	준설 작업 (Dredging)
연료저장시설 (Gas tanks)	운동장 (Athletic fields)	제방 (Dikes)	쓰레기 제거(Garbage removal)
발전설비 (Generators)	표지시설(Beacons)	선착장 (Docks)	고속도로 공사 (Highways)
난간 (Guard rails)	방음타일 설비	전기배선 공사 (Electrical works)	유지·보수 공사 (Maintenance)
장식용 철구조물	(Ceilings, metal or acoustical tile)	굴착공사 (Excavation)	고가도로 공사 (Overpasses)
(Ironwork, ornamental)	석탄 저장고 (Coal storage)	기초공사 (Foundations)	도로 공사 (Roads)
주방설비 (Kitchen equipment)	낙수받이 및 하수도 설비	가스관 공사 (Gas pipng)	버팀목 설치 공사 (Shoring)
水門 (Lock gates)	(Curb and gutter)	곡물창고 공사 (Grain elevators)	도로포장 공사 (Street paving)
금속창 (Metal windows)	칸막이벽 설비 (Curtain walls)	난방시설 (Heating systems)	철구조물 (Structural iron and steel)
주차요금부과시설 (Parking meters)	수송관 (Ducts, underground)	소각로 공사 (Incinerators)	보링 (Test borings)
가스·석유수송관	승강기 설비(Elevators)	방파제 공사 (Jetties)	재제 (Timber cutting)
(Pipelines, oil and gas)	투광조명 설비 (Floodlights)	수문·갑문시설 (Locks)	지하도 공사 (Underpasses)
경찰경보장치 (Police alarms)	유리창 설비 (Glazing)	벽돌공사 (Masonry)	육교 공사 (Viaducts)
송신탑 (Radio towers)	온실 설비 (Greenhouses)	교각 (Piers)	
냉동공장 (Refrigerating plants)	기계설비 (Machinery)	말뚝 박기 공사 (Piling)	
비계 (Scaffolding)	목재창호 설비 (Millwork)	송수관 공사 (Pipelines, water)	
보도시설 (Sidewalks)	벽 (Murals)	발전소 (Plants, power)	
철도신호설비	주차장 설비 (Parking areas)	하수처리장	
(Signal systems, railroad)	공원 (Parks)	(Plants, sewage-disposal)	
도로표지 (Signs)	고압관 설비 (Piping, high-pressure)	석장공사 (Plastering)	
서고(Stack rooms)	운동장 (Playgrounds)	배관설비 시설 (Plumbing)	
저수탑·급수탑 (Stand pipes)	방파제 설비 (River bank protection)		
가로등 시설 (Street lighting)	도로 중앙분리대 시설	하수도 설비 (Sewers)	
연료저장시설 (Tanks, gas)	(Road medians)		
온도조절장치	지붕 설비 (Roofing)	지하철 공사 (Subways)	
(Thermostat equipment)	스키 리프트 시설 (Ski lifts)	터널 공사 (Tunnels)	
저수탑 (Towers, water)	살수 설비 (Sprinkler systems)	급수시설 공사 (Waterworks)	
트랙공사 (Track laying)	石가구 설치 (Stone, Furnishing)	우물 (Wells)	
교통신호기(Traffic control systems)	저장탱크 (Storage tanks, metal)	선창 (Wharves)	
틈마개 공사 (Weatherstripping)	테니스장 설비 (Tennis courts)		
창청소(Window cleaning)	방수 설비 (Waterproofing)		
	풍동 설비 (Wind Tunnels)		

자료: Clouch and Sears (1994) p. 183.에서 인용.

또한 보증회사는 보증심사를 통하여 시공업자의 신인도, 시공능력, 자금력에 따라 보증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²⁶⁾. 특기할 만한 사실은 보증회사는 보증금률에 관계없이 공사계약 금액에 따라 보증요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증회사의 보증책임은 시공업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한해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률은 보증회사가 실제로 배상하는 손실액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행보증증권만 발행하는 경우와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모두 발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동일하다.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지불보증증권만을 발행하는 경우는 이행보증증권 수수료의 50% 정도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찰보증증권은 입찰보증 한건당 50달러 정도이며, 연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는 100달러이다. 그러나, 입찰보증증권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건설보증증권의 보증요율 예시는 [표 II-5] 참조).

[표 Ⅱ-5] 미국의 보증증권 보증수수료율(예시)

(단위:달러)

공 사 금 액	기 본 수 수 료			
о ү п ≒	A-1형	A형	B형	기타
100,000달러 이하	9.40	15.00	25.00	19.50
100,000달러 초과 400,000달러 이하	7.20	10.00	15.00	15.00
400,000달러 초과 2,000,000달러 이하	6.00	7.00	10.00	12.00
2,000,000달러 초과 2,500,000달러 이하	5.00	5.50	7.50	10.00
2,500,000달러 초과 7,500,000달러 이하	4.50	5.00	7.00	9.00
7,500,000달러 이상	4.00	4.50	6.50	8.00

- 주: 1. 공사계약 금액 1,000달러에 대한 수수료임(보증금률에 관계없이 공사계약금액에 대해서 보증수수료를 결정함).
 - 2. 공사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의 수수료이고,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는 1개월에 1%를 가산함.
 - 3. 총액계약(Lump-Sum Contract)과 단가계약(Unit-Price Contract)일 경우이고,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 증증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임(공공공사의 경우는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동시 에 요구하고 있어서, 이행보증증권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나, 민간공사는 이행보증증권만을 요구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같은 보증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²⁶⁾ 미국 보증회사협회(Surety Association of America)는 1990년까지 보증요율을 책정하여 회원사에 제공하였으나, 1991년부터 보증회사협회는 회원사가 제출한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손해비용(Loss Cost)만을 계산하여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각 보증회사는 각자의 경비(Expense)와 시공업자에 대한 보증심사 결과를 이용하여 보증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III. 일본의 건설보증제도

일본의 건설관련 보증제도는 공사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와 전불금(우리나라의 선급금) 보증제도가 있다²⁷⁾. 먼저 제1절에서 공사이행보증제도를 설명하고 제2절에서 전불금보 증제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1. 공사이행보증제도

일본의 공공공사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는 1995년까지 주로 공사완성보증인 제도였다.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시공연대보증인 제도와 흡사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을 한 시공업자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시에 미리 정해진 공사완성보증인이본래의 시공업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성를 보증하는 역무적 성격의 보증제도이다. 일본에서 공사완성보증인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된 것은 회계법령²⁸⁾ 등에서동제도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발주자가 보증비용 부담없이 공사완성을 보증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²⁹⁾. 이와 같은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³⁰⁾이 지적되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1995년 6월 대장성은 「예산결산 및 회계령」(이하 예결령)을 개정하고,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규정에 공공공사 이행보증증권을 추가했고, 건설성은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31)을 개정하였다(부록 6: 신구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약관」참조). 이에 따라건설성은 1995년 11월 이후 토목공사는 2억엔, 건축공사는 1억엔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이행보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6년 4월부터는 모든 공사에 새로운 이행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996년부터 점차적으로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²⁷⁾ 회계법 제29조의 4에서 경쟁입찰의 경우 견적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채, 금융채, 보증수표 등 유가증권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입찰보증증권이 활용되지는 않는다. 부록5: 공공공사 ㅇ이행보증과 관련된 일본 법령 중 예산결산 및 회계령 참조.

²⁸⁾ 일본의 회계법령은 「회계법」과 閣議에서 제정하는 政令인 「예산결산 및 회계령」과 대장성에서 제정한 省令인 「계약사무 취급규칙」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회계관계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있다.

²⁹⁾ 건설공사 계약시 보증 비용은 건설회사가 지불하나 공사비 적산시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궁극적으로 발주자의 부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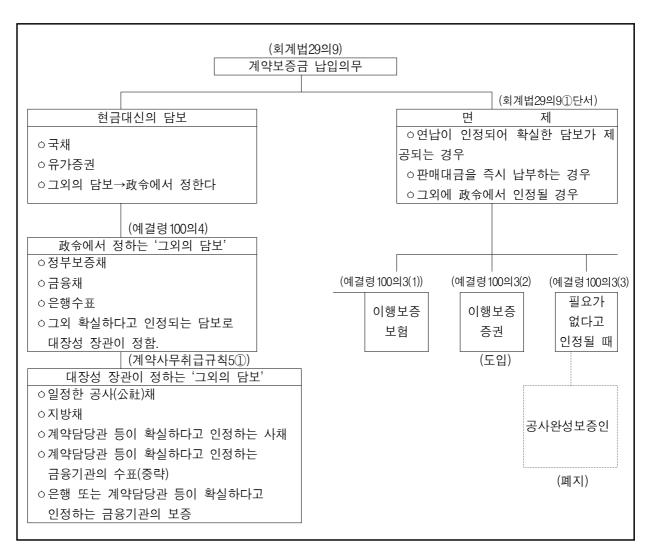
³⁰⁾ 공사완성보증인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경쟁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대가없이 다른 건설 업자를 보증하는 부자연스러운 제도이고, 둘째, 지명업자간 보증인이 될 경우에는 낙찰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가 공사를 인수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세째, 담합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공사완성보증을 서주지 않는 방법으로 담합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31) 「}일본의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약관」은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일반 계약조건」에 해당된다.

(1) 회계법령 등의 공공공사 이행보증 규정

일본의 회계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에서는 공공공사 도급업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국채 등의 유가증권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증 등이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대신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증권 (개정시 추가)을 제출하는 경우와 계약담당관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표 III-1] 참조).

[표 Ⅲ-1] 일본 회계법령에서의 이행보증 관계규정 개요



공사완성보증인이 입보되는 등 확실한 이행이 기대될 때는 계약보증금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 공사완성보증인 제도가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 다. 지방자치법령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같은 식의 해석을 취하고 있다(부록 5: 공공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일본 법령 참조).

(2) 일본의 새로운 이행보증제도

일본의 공공공사 이행보증 제도의 개선은 광범위하게 이용되던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회계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던 금전적 보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완성보증인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역무적 성격의 보증은 이행보증증권를 도입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32) ([표 III-2] 참조).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금전적 보증수단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체계가 불충분한 경우와 시설의 공용개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의 보완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선택에 의해서 역무적 보증인 이행보증증권을 건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개 선되었다.

발주자가 금전적 보증을 요구할 경우에 시공업자는 다양한 금전적 보증수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발주자가 역무적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33)에는 보증금율(계약금액 대비보증금액의 비율)이 높은 이행보증증권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34).

발주자가 금전적 보증을 요구할 경우 건설업자가 다양한 보증수단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은 이행보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쟁성을 제고하며 중소건설업자도 원활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특히 전불금 보증사업³⁵⁾을 수행하는 전불금 보증회사에게 금전적 보증 수단의 하나인 계약보증 사업을 인가한 것은 중소건설업자를 위한조치이다.

이하에서는 각 보증수단별로 계약형태, 인수기관 및 보증요율 등을 살펴본다.

1) 이행보증증권

이행보증증권은 보증회사가 시공업자(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보증금액 한도내에서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발주자(채권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거나 건설업자를 대신해서 공사 완성을 보장하여 주는 보증이다³⁶).

³²⁾ 일본의 회계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에서는 공사의 이행보증으로서는 계약보증금이 원칙으로 이미 정립되었으므로 이번 개정이 원칙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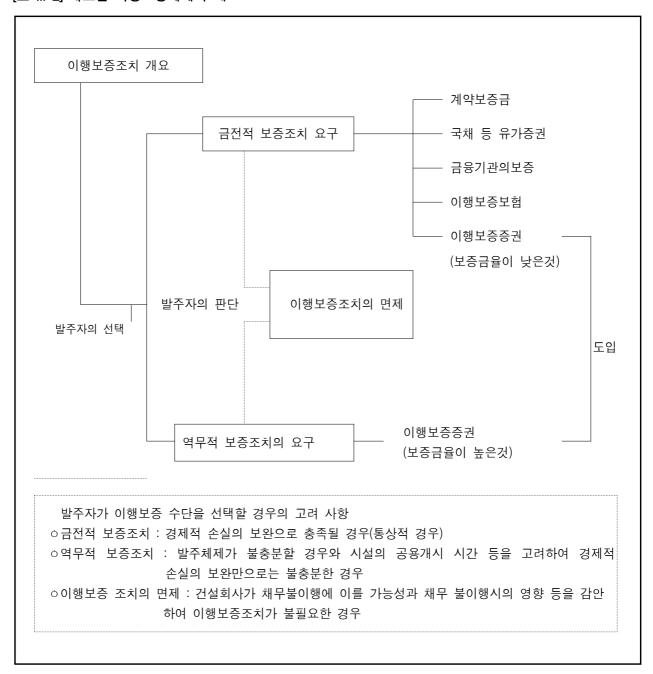
³³⁾ 발주자가 역무적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체계가 불충분하여 재발주가 곤란한 경우와 공공시설의 공용개시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³⁴⁾ 역무적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특약이 첨부된 이행보증증권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의 비교는 부록6: 일본의 신구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발췌) 참조.

³⁵⁾ 전불금은 우리나라의 선급금에 해당되는 용어이고, 전불금 보증은 3개의 전불금 보증사업회사(동 일본건설업보증주식회사, 서일본건설업보증주식회사, 북해도건설신용주식회사)가 전담하고 있다.

^{36) 「}공공공사용 보증계약 기본약관」에는 건설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발주자에게 보증금액을 지불하든지, 건설회사를 대신해서 공사를 완성하든지,

[표 Ⅲ-2] 새로운 이행보증체계의 개요



발주자와 시공업자간의 공사계약(주계약)을 전제로 건설업자(주채무자)와 보증회사(손해보험회사) 간의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위탁계약을 근거로 발주자(채권자)는 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이 보증계약에 의해서 보증회사(손해보험회사)는 공사의이행을 보증하게 된다37).

이행보증증권은 금전적 보증과 역무적 보증 어느 경우에나 이용이 가능하다. 보증회

발주자의 승락하에 대체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완성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부록7: 공공공사용 보증계약 기본약관 참조).

³⁷⁾ 보험회사는 보증계약에 의해서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위탁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어도 보증계약은 유효하다.

사(손해보험회사)는 주채무자(건설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발주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든지 보증금 납부와 대체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든지를 선택할 수있다. 따라서,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납입하여야 할 보증금과 대체업자 선정시 증가 비용(계약금액의 증가와 재발주 사무비용 등)을 비교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발주자가 역무적 보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보증금율을 높게 설정하면 손해 보험회사가 보증금 납입보다 유리해지는 역무적 보증을 선택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에서는 역무적 보증의 경우 보증금율을 30%로 예시하고 있다.

이행보증증권으로서 역무적 보증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발주자는 입찰공고에서 역무적 보증(보증금율이 높은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할 것인지를 밝힌다([표 III-3] 참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건설업자는 특정 손해보험회사에 이행보증증권신청을 한다. 이행보증증권 신청을 받은 손해보험회사는 건설회사에 대한 보증심사를 하여 보증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보증조건과 보증요율을 결정하여 건설업자와 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증권을 건설업자에게 발행한다.

건설업자는 이행보증증권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은 발주처는 손해보험회사와 보증계약38)을 체결하고,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건설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대체이행 청구를 통지하고, 손해보험회사에게 대체이행청구를 한다39)40). 대체이행 청구를 받은 손해보험회사는 대체업자를 선정하고, 발주자에게 대체업자 승인을 의뢰한다. 발주자가 대체업자를 승인하면 대체이행업자는 손해보험회사와 대체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대체이행업자는 잔여공사를 수행하고, 발주자에게 잔여 이행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에 추가비용을 청구한다. 손해보험회사가 증가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는 원계약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한다.

손해보험회사는 이행보증증권 인수시에 건설업자의 재정상태, 기술력, 이행능력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표 III-4]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³⁸⁾ 보증계약은 발주자와 보증회사간의 계약으로 보증인의 발주자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채무자(건설업자)와의 계약 변경사항 통지 등 보증회사에게 발주자의 보증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부록7: 공공공사용 보증계약 기본약관 참조).

³⁹⁾ 물론 보증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 보증채무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⁴⁰⁾ 발주자가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보증인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1)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 2) 채무불이행의 사실 및 청구액을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보증인이 손해조사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다(부록7: 공공공사용 보증계약 기본약관 제7조).

[표 Ⅲ-3] 이행보증증권에 의한 보증

[표 Ⅲ-4] 이행보증증권 인수 심사방법

1. 기업현황 · 경영내용			
결 산 서 ○주로 재무상황을 중심으로 도산 리스크 분석			
↓			
2. 기술력			
	○과거의 공사경력(실적)분석(공사종류·공사완성고)		
공사경력서 공사경력서	(과거 동종의 공사실적 등)		
5 사경 역시	ㅇ기술자 종류와 인원수		
	○현재 수행중인 공사의 확인(기존 공사의 진행 상황 등)		
	\downarrow		
3. 당해공사의 시공능력			
	ㅇ계약내용 분석(조건, 면책규정 등)		
공사계약서	ㅇ공사내용분석(계약금액, 스케줄, 조건 등)		
	○공사체제(기술자의 확보, 하도급자 및 자재 확보상황)		
	○현재 수행중인 공사의 확인(기존 공사의 수, 진행상황 등)		

4. 종합판단

ㅇ결산서, 공사이력서, 공사계약서의 서류심사 외에 업자에 대한 면접, 현지조사 및 외부조사기관(전문기관) 등 조회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공사의 운영상황 등을 분석 당해공사의 시공능력을 종합판단.



5. 인수 여부 및 인수 조건 결정

○최종적으로 인수의 여부 및 인수 조건을 결정함(담보설정 등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예: 담보설정을 조건으로하는 경우도 있음)

이행보증증권의 인수기관은 손해보험회사이며 현재 일본에는 23개 손해보험회사와 18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있다.

이행보증증권의 보증요율은 손해보험회사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3등급(A, B, C급)으로 나누어 보증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우량업자는 할인하고, 불량업자는 할증한다. 손해보험사가 이용하고있는 공사등급과 보증요율은 [표III-5]과 [표III-6]과 같다41).

⁴¹⁾ 이행보증증권의 요율에 관한 자세한 것은 公共工事履行保證研究會(1995), 新しい 履行保證制度の解說 pp. 87-88 참조.

[표 Ⅲ-5] 손해보험회사의 공사등급(예시)

	A급 공사	B급 공사	C급 공사
도 로	통상의 도로공사	입체교차로, 고가, 제방	교량, 터널
하 천	_	통상의 하천공사	댐
하수도	부지 배관공사	하수도본관, 하수처리장	_
철 도	_	통상의 철도공사	교량, 터널, 지하철
전 력	_	배선, 화력발전소	수력·원자력 발전소
건 축	내장공사, 비계공사	건물건축공사	_

[표 Ⅲ-6] 이행보증증권 기본보증 수수료율(예시)

(단위: ¥)

보증금율	A급공사	B급공사	C급공사
10%	0.78	1.11	1.44
30%	1.57	2.24	2.91

주: 1) 보증기간 1년에 대한 공사계약 금액 1,000엔에 대한 보증수수료이고, 1년이 넘는 경우는 1개월마다 년간 보증 수수료의 1%를 가산한다.

2) 공사계약 금액이 3,000만 엔 이상인 경우는 35~53%까지 할인한다.

2)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은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건설업자의 계약불이행시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손해보험회사가 발주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보증하는 금전적 보증 수단이다. 이행보증보험이 이행보증증권과 다른 점은 첫째, 이행보증증권이 금전적 보증과 역무적 보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이행보증보험은 금전적 보증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둘째, 이행보증의 계약은 손해보험회사와 건설업자간의 보험계약만이 존재하고, 발주자와 손해보험회사 간의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사계약시 건설업자가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건설업자의 계약불이행시 발주자가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보증이 이루어진다. 이때 공사계약해지가 보험금 청구의 요건이다. 새로운 이행보증 체계 이전에도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에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공사완성보증인 제도가 이용되었으므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세째, 이행보증증권은 보증위탁 계약에 근거한 구상권이 존재하나 이행보증보험은 보 험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이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요율과 보험인수 심사방법은 이행보 증증권과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3)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증

① 은행의 보증

은행의 보증은 은행의 채무지급보증 업무의 일환으로, 건설업자와 은행이 체결하는 보증위탁계약 및 은행과 발주자가 체결하는 채무보증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표 III-7] 참조). 은행의 보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공사의 낙찰자는 은행에 보증서발행을 의뢰하고, 보증서발행을 의뢰받은 은행은 보증심사를 하게 된다. 보증인수를 결정하면 건설업자와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자에게 보증서를 발행한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건설업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한 후 해제통지서를 주채무자(건설업자)와 은행에 발송한다. 또한 은행에 대해서는 보증채무 이행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 통지서를 받은 은행은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지불한다. 발주자는 기성고를 산정하고, 잔여공사는 재발주하여 공사를 완성한다. 은행의 보증요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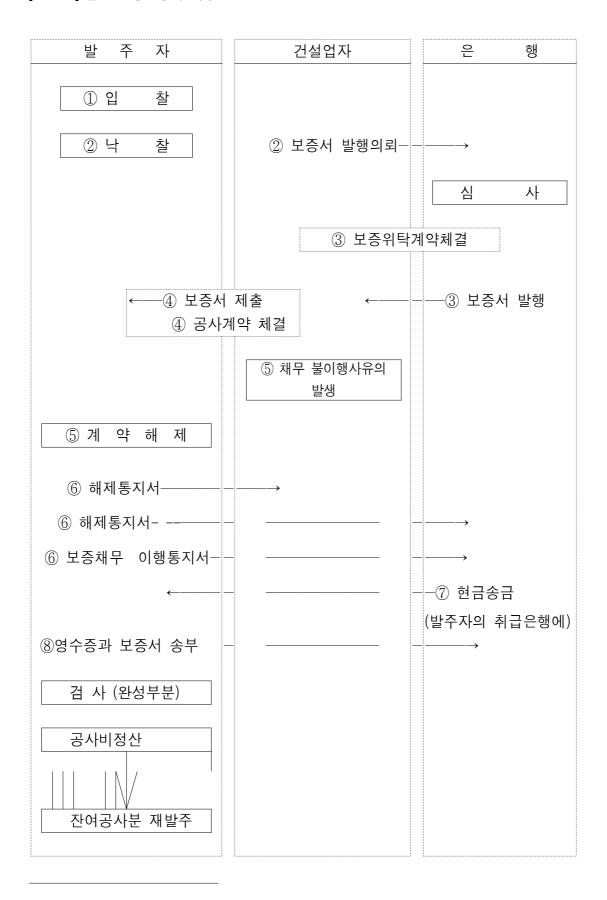
② 전불금 보증회사의 계약보증

건설업 전불금 보증을 전업하던 전불금 보증회사에게 「계약보증」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이행의 금전보증이 추가되었다. 「계약보증」의 과정은 위에서 설명한 은행의 보증과정과 유사하다⁴²⁾. 보증요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0.45[~]0.90%이고, 건설업자에 따라 차등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이다(日本建設工業新聞, 1996. 3. 28.)⁴³⁾.

⁴²⁾ 부록9: 일본의 전불금 보증야관 중 공공공사 계약보증에 관한 특약 조항 참조.

⁴³⁾ 유럽의 공사이행보증 제도는 발주자에 의한 사전자격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금전적보증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계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공공계약법(Code des marches publics)인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3~5%로 규정하고 있는데(프랑스공공계약법 제125조) 주로 은행보증이 대신한다. 영국은 보증수단 및 보증금액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주어지지 않으며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지는데, 이는 발주자가 입찰과정에서 도급업자를 엄정하게 선택하기 때문이다. 정부 토목·건축공사에서는 면제되나 일부 발주청에서는 10%이내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은행 또는 보증회사가 보증한다. 독일은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공사계약 시행규칙(VOB: Verdingsordung fur Bauleistungen)에 계약과 관련한 보증이 규정되어 있는데, 보증금의 한도는 발주총액의 5%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없고 도급업자의 신인도가 높으며 결함에 대한 충분한 방법이 있는 경우 이행보증이면제될 수도 있다.

[표 Ⅲ-7] 일본 은행보증의 과정



2. 전불금 보증 제도

(1) 전불금 보증

일본의 전불금 보증이란 우리나라의 선급금 보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공공사의 발 주자가 전불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전불금에 대한 손실 부분을 대신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수급인이 공사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보증회사가 발주자에게 전불금의 손실 부분을 지불하거나, 발주 자가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을 때는 당 해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전불금의 손실부분을 지불하는 제도이다44).

(2) 전불금 보증제도의 연혁45)

일본 정부는 1952년 「공공공사의 전불금 보증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불금 보증사업회사라는 보증기구를 설립하여 전불금 보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 과 같다.

건설업은 일단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생산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착공시기에 자재구입, 가설공사, 노동자의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므로 건설업자는 자금 확보가 큰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1950년대초 일본 건설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자에게는 더욱 큰 문제였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 국내의 자재비와 노무비 등이 급등하게 됨으로써 건설업자는 평소보다 더욱 심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공공공사의 불이행 사고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발생에 대하여 일본 건설업계는 물론 건설성에서도 크게 우려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유일한 방안은 자금난으로부터 건설업계를 해방시키는 것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952년 「공공공사의 전불금 보증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불금 보증사업회사라는 보증기구를 설립하여 전불금 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민간공사에서는 공사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공공공사에도 공사대금을 미리 지불해줌으로써 건설업자의 사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여 적정시공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상을 현실화하는 데는 2가지 문제가 존재하였다. 하나는 공사대 금을 미리 지불하였을 경우에 그래도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⁴⁴⁾ 공사완성보증인이 폐지된 경우는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지불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사완성보증인에 대해서는 본장의 제1절 공사이행보증제도 참조.

⁴⁵⁾ 이 부분은 건설공제조합(1980), 일본의 건설업 pp. 9-10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는 미리 지불한 공사대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문제와 또 하나는 건설업자가 과연 미리 지불한 공사대금을 그 공사에 사용하는 지의 여부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미리 지불한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전불금 보증제도이다.

(3) 전불금 보증제도의 운영 체계

전불금 보증회사는 전불금의 적정한 지불 및 사용 감사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건설업자는 그 공사계약⁴⁶⁾에 근거해서 보증회사에 전불금 보증 신청을 한다. 보증신청시 건설업자는 보증신청서, 공사계약서 사본, 전불금사용내용명세서,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내역명세서, 공정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한다. 보증회사는 보증심사를 하여 공사가 전불금 대상공사이고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건설업자와 보증계약 47)을 체결하고 발주자를 피보증자⁴⁸⁾로 하는 보증증권을 발행한다(부록9: 일본의 전불금보증준약관 참조).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보증회사는 전불금예탁 취급의뢰서, 예탁금 수입통지서, 전불금사용내역명세서 사본을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중 건설업자가 선정한 금융기관에 송부한다. 건설업자는 보증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전불금을 건설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탁시킨다.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에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서 지불을 신청한다. 금융기관은 신청내용이 사용내역명세서에 부합할 경우에는 전불금을 지불한다([표 III-8] 참조).

(4) 전불금 보증사업회사

전불금보증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을 하고 보증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북해도건설업 신용보증주식회사, 동일본건설업보증주식회사, 서일본건설업보증주식회사의 3개 회사가 있다. 이들 회사는 주로 건설업자와 금융기관 등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3사 모두 1952년에 발족하였다([표 III-9] 참조)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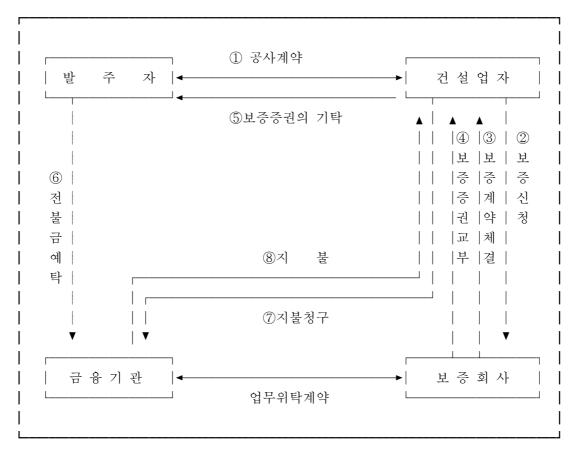
⁴⁶⁾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전불금의 비율, 상환방법, 용도 등을 명백히 하고 있다.

⁴⁷⁾ 보증계약이라는 용어는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계약과 상이하게 사용된다. 이행보증증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보증회사(손해보험회사)간의 계약이 보증계약이고, 보증회사와 건설업자와 맺는계약은 보증위탁계약으로 표현하고 있다.

⁴⁸⁾ 여기서 피보증자는 보증채권자를 의미한다.

⁴⁹⁾ 전불금보증사업회사는 전불금 보증 이외에 대출보증 사업도 금융보증이라는 명칭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불금보증사업회사가 할 수 있는 대출보증은 1) 공공공사에 관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2)토목건축공사의 경우에 기계류의 취득에 관한 자금을 대출 받는 경

[표 Ⅲ-8] 전불금 보증의 운영체계



[표 Ⅲ-9] 일본의 전불금보증주식회사 개요

		북해도건설업			서일본건설업		합	계			
		신용보증(주)			보증(주)						
본				점	사뽀로	도	쿄	오사카			
자		본		叩	4억 엔	209	1엔	10억엔			
	취	급	건	수	41,122	212,	441	166,470		42	0,033
1994	취	급	금	액	7,068억 엔	46,135°	1엔	31,852억 엔		85,056	3억엔
년도 실적	보증	승대상	게약	급액	18,458억 엔	141,7069	1엔	99,018억 엔		259,183	3억엔
	보충	증실 건	적업 7	아 수	5,930	30,	751	35,263		7	1,944
계 약	대	상	법 자	수	7,948	55,	975	56,874		12	0,797

우 3) 토목건축에 관한 공사를 하는자 또는 건설컨설턴트가 외국에서 행하는 업무에 관한 자금의 대부 또는 채무의 보증을 받는 경우에 있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 등도 수행하고 있다(공공공사의 전불금보증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또한 제1절 이행보증 제도에서 언급했듯이 계약보증이라는 이름으로 금전적 이행보증도 수행하고 있다.

(5) 전불금보증회사의 보증한도

전불금 보증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험사업과 같이 개별 보증회사의 보증한도를 정하고 있다. 전불금보증회사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적립금 및 전기이월금의 합계)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⁵⁰⁾.

또한 한 계약자에 대한 보증금액도 제한하고 있다. 사업방법서에는 전불금보증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1개 건설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규정하고 있다⁵¹⁾.

(6) 보증요율

전불금 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으로 건설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데 요율은 다음의 [표 III-10] 같다.

[표 Ⅲ-10] 전불금 보증요율

전 불 금 액	요 율
300만엔 이하의 금액	<u>0.23</u> 100
300만엔 이상, 1,000만엔 이하의 금액	<u>0.40</u> 100
1,000만엔 이상, 2,000만엔 이하의 금액	<u>0.44</u> 100
2,000만엔 이상, 5,000만엔 이하의 금액	<u>0.45</u> 100
5,000만엔 이상, 1억엔이하의 금액	<u>0.48</u> 100
1억엔 초과금액	<u>0.5</u> 100

⁵⁰⁾ 전불금보증회사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정한 것은 보험회사의 예를 따른 것이다.

⁵¹⁾ 동일본건설업보증주식회사의 전불금보증 사업방법서 제5조는 한 계약자에 대한 전불금 보증 한도를 보증회사 전체의 보증한도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강승희, 1996, 미국의 SURETY BOND 제도 (서울: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1980, **일본의 건설업(No.3) - 일본의 공공공사의 전불금 제도와 건설업보증회사**, (서울: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1993, **주요국가의 건설업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보고 -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건설공제조합)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1988, **보증보험연구 -미국의 보증증권-**, 조사연구자료집 제5집 (서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이재우외 2인, 1994, 건설업보증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建設經濟研究所, 1987, **諸外國の公共工事の入札·契約·保證制度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 (東京: 建設經濟研究所)

公共工事履行保證研究會(編著), 1995, **公共工事に關する新たなた保證體系**(東京: 大成出版社)

公共工事履行保證研究會(編著), 1995, **新しい 履行保證制度の解説**(東京: 大成出版社) 日本建設工業新聞, 1996. 3. 28.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and National Association of Surety Bond Producers, 1993, **The Basic Bond Books**

Clough and Sears, 1994, Construction Contracting, 4th ed.

Fisk and Calhoun, 1992, Contracts and Specifications for Public Works Projects

Levy, Sidney M., 1994, **Project Management in Construction** (New York: McGraw-Hill)

National Association of Surety Bond Producers, 1996, Bonds on Public Works

Remnen, Albert, 1977, The Contract Bond Book

Richter and Mitchell, 1982, Handbook of Construction Law and Claims

Welch, John W. et al, 1992, **Contract Surety**, Vol. I & II (Malvern, PA: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ABSTRACT>

The Construction Guarantee System in U.S.A. and Japan

This survey examines the guarantee system in conjunction with construction project in U.S.A. and Japan.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help policymakers in the Government and bonding institutes to reformulate the policy as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is effective in 1997. Also the survey purports to help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o enter the markets in U.S.A. and Japan.

The guarantee system in U.S.A. is a surety bond system. The surety bond is a promise to be liable for the debt, default or failure of another. The construction contract surety bonds are bid bond, performance bond and 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The contract surety bonds are provided as the basic instrument of prequalification. There are also maintenance bond and advance payment bond, which are sometimes required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The bid bond provides that the surety will compensate the owner if the bidder is awarded the contract but fails to accept and sign it or fails to provide the requisite performance and 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s. The performance bond assures that the contractor will build what has contracted to buil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plan and specifications and performs all the other obligat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 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assures that certain suppliers of labor and materials on the project will be paid subject to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imposed by statute, the contract or the bond itself.

The guarantee system in Japan is two classes. One is a construction contract guarantee scheme and the other is an advance payment guarantee scheme. The construction guarantee was generally a Bonds-Contractor scheme until 1995. The Bonds-Contractor must take over the contract with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the original contract's if the contractor defaults. However, the scheme is being replaced by performance bond and other monetary guarantee schemes by the choice of project owner. The owner chooses the guarantee schem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s. For example, the owner requires the contractor to pose the performance bond if he thinks that the timeliness of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s important. The advance payment guarantee scheme is an advance payment bond. The advance payment bond is provided for the public construction contract with advance payment provisions exclusively by three construction surety companies.

◇ 부 록 ◇

부록1. 미국의 건설보증증권 표준양식

- (1) 미건축가 협회 입찰보증증권 양식(AIA Document A310)
- (2) 미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이행보증증권 양식
- (3) 미건축가 협회 이행보증증권 양식(AIA Document A312)
- (4) 미건축가협회 지불보증증권 양식(AIA Document A312)
- (5) 선급금보증증권 양식(Chubb사의 경우)
- (6) 하자보수보증증권 양식

부록2. 미국의 발주자와 보증회사간의 인수약정서(예시: 뉴욕주)

부록3. 미국의 일괄보상약정 양식(Aetna사의 경우)

부록4. 미국의 공사진척보고서 양식(American International사의 경우)

부록5. 공공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일본 법령(발췌)

- (1) 회계법
- (2) 예산결산 및 회계령
- (3) 계약사무 취급규칙
- (4)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록6. 일본의 新舊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발췌)

부록7. 일본의 공공공사용 보증계약 기본 약관 하자담보 보증 특약조항

부록8. 일본의 공공공사용 보증위탁계약 기본 약관 대체이행에 관한 특약조항

부록9. 일본의 전불금보증계약 기본 약관

부록1: 미국의 건설보증증권 양식

(1) 미건축가협회 입찰보증증권양식(AIA Document A310)

(2) 미연방조달청 이행보증증권양식



(3) 미건축가협회 이행보증증권양식(AIA Document A312)



_	38	_

(4) 미건축가협회 지불보증증권양식(AIA Document A312)





(5) 미국의 선급금보증증권양식(Chubb사의 경우)

(6) 미국의 하자보수보증증권양식

부록2: 발주자와 보증회사간의 인수약정서(예시: 뉴욕주)











_	50	_

_	51	_

부록3: 미국의 일괄보상약정 양식(Aetna사의 경우)

_	53	_
	.).)	

_	55	_

부록4: 미국의 공사진척보고서 양식(American International사의 경우)

부록5: 공공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일본 법령(발췌)

1. 회계법

(계약보증금 납부)

제29조의 9

- ① 계약담당관 등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 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연납이 인정될 경우에 확실한 담보를 제 공하는 때, 그 자가 물품의 판매대금을 즉각 납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계약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이것을 준용한다.

(보증금 납부)

제29조의4

- ① 계약담당관 등은 전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경쟁에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경쟁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자가 견적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금을 납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령이 정한 바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보증금 납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채 또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그 외의 담보제공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예산결산 및 회계령

(계약보증금에 대신할 담보)

제100조의 4

제78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관 등이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대신하여 담보를 제공시킬 경우에 준용한다.

(입찰보증금에 대신할 담보)

제78조

- ① 회계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담당관 등이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대신하여 제공시킬 수 있는 담보는 국채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정부 보증 채권
 - 2. 자금운용부 자금법 제7조 1항 9호에 규정하는 금융채

- 3. 은행이 발행하거나 지불보증한 수표
- 4. 기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로서 대장성 장관이 정한 것
- ② 전항의 담보가치 및 그 제공 절차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장성 장관이 정한 는 바에의하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

제100조의 3

계약담당관 등은 회계법 제29조의 9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다음에 오는 경우에서는 계약보증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시키지 않을 수 있다.

- 1. 계약상대방이 보험회사와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보험회사와 공사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1996년 6월 정령 제246호에 의해 신설)
- 3. 제72조 제1항의 자격을 갖는 자에 의한 일반경쟁 참가, 또는 지명경쟁 나아가서는 경매에 붙이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될 때.

제72조

① 각 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맡은 직원은 필요할 때에 공사, 제조, 물건의 매입, 그 외에 대해서의 계약 종류마다 그 금액등에 따라 공사, 제조 또는 판매등의 실적, 종업원 수, 자본금 및 그 외의 경영 상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

3. 계약사무 취급규칙

(대장성 장관이 정한 입찰보증금에 대신할 담보)

제5조

- ① 영 제78조 제1항 제4호(영 제100조의4에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에 규정하는 대장성 장관이 정한 담보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영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 국유철도 개혁법(昭和 61년 법률 제87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전의 일본 국유철도법(昭和 23년 법률 제256호)제 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일본국유철도 및 일본 전신전화주식회사법(昭和 59년 법률 제89호)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으로 해산전의 일본전신전화공사가 발행한 채권(이하 '공사채'라고 함)
 - 2. 지방채
 - 3. 계약담당관 등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社債
 - 4. 계약담당관 등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출자수입, 보관금융 금리등의 단속등에 관한 법률(昭和 29년 법률 제195호)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같음) 이 발행하거

- 나 지불보증한 수표.
- 5. 은행 또는 계약담당관 등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이 인수하거나 보증 내지는 이서 한 한 어음.
 - 6. 은행 또는 계약 담당관 등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예금 채권
 - 7. 은행 또는 계약담당관 등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보증

4. 지방자치법 시행령

(계약보증금)

제167조 16

- ① 보통지방공공단체는 해당지방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비율 또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 ② 제167조의 7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 이것을 준용한다.

(일반 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제167조의 7

- ①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해당보통지방 공공단체의 규칙에 정한 비율 또는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납부시켜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채, 지방채 그 외 보통지방 공공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로 대신할 수 있다.

부록6: 일본의 新舊 공공공사 표준 청부 계약 약관(발췌)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신)

공공 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구)

(계약 보증)

제4조(A)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 제5조(A) 을은 이 계약에 따르는 채무 각 호에서 언급한 보증을 첨부해야 한다. 단 제五번의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그 보험증권을 갑에게 기탁 해야 한다.

- 계약보증금 납부
- 그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담보가 되는 유가증 권 등의 제공
- 三 이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 금이 발생할 때 그 손해금의 지불을 보증하 는 은행, 또는 갑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
- 四 이 계약에 따르는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공 공공사 이행보증 증권에 의한 보증
- 五 이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평가 보상하는 이행보증 (이행보증 보험) 보험 계약의 체결
- 2. 전항의 보증에 관한 계약보증금의 액수, 보 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제4항에서는 「보증액 」이라 한다)은 계약금액의 10분의 ○이상으 로 해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을이 동항 제그호 또 는 제三호에서 언급한 보증을 첨부했을 때. 해당 보증은 계약보증금을 대신하는 담보제 2. 전항의 보험계약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공으로서 행사되며, 동항 제四호 또는 제五 호에서 언급한 보증을 첨부했을 때는 계약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계약 보증)

불이행에으로 인해 손해금이 발생할 때 그 손해금의 지불을 보증하는 금전보증 인을 세워야 한다.

2. 전항의 보증인은 갑이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주의](A)는 금전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사용한다.

제5조(C) 을은 이 계약에 따르는 채무 불이 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평가 보상 하는 이행 보증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그 보험증권을 갑에게 기탁하여 야 한다.

10분의○이상으로 해야 한다.

주의 (C)는 이행 보증보험을 첨부할 경우 에 사용한다.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신)

공공 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구)

- 4. 계약금액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보증액이 변 제5조(B) 을은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동후 계약금액의 10분의 ○에 이를 때까┃ 지 갑은 보증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 (A)는 금전적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I 다.
- 제4조(B)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따르는 책무 이행을 보증하는 공공 공사 이행보증증권에 의거한 보증(하자담보 특약을 첨부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해야 한┃ 다.
- 2. 전항의 경우에서 보증금액은 청부대금액의 10분의 ○이상으로 해야한다.
- 3. 계약금액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보증금액이 변동 계약금액의 10분의 ○에 이를 때가 지, 갑은 보증금액의 증액을, 을은 보증금 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 (B)는 역무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사 용하며, ○에는 가령, 3을 기입한다.

- 에 자신을 대신하여 직접 공사를 완성할 것을 보증하는 다른 건설업자를 공사완성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 사용하며 ○에는 가령, 1을 기입한 2. 전항의 보증인은 갑이 정하는 기준의 범 위 내에서 선정되야 한다.

[주의] (B)는 공사완성 보증인을 세울 경 우에 사용한다.

부록7: 일본의 공공공사용 보증계약 기본약관

(보증약관 창설 취지)

이 보증약관은 공공공사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며, 동시에 국제성 유지를 목적으로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ICC 계약보증증권 통일규칙 제524호 (ICC Uniform Rules for Contract Bonds No. 524)」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보증채무의 부담)

- 제1조 보증인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보증기간 중 보증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불이행(이하 「채무불이행」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증권에 기재된 보증금액(이하「보증금액」이라 한다) 한도 내에서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 2. 전항의 주채무에는 다음 각 호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1) 하자담보채무
- (2) 주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수령한 전불금의 반환 채무
- 3. 제1항에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에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주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주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채무불이행을 포함한다.

(보증채무의 소멸)

- 제2조 보증인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보증금액을 채 권자에게 지불함으로써 언제든지 전조에서 규정하는 보증인의 채무(이하 「보증채무」 라 한다) 및 특약조항에 규정하는 보증인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 2. 전항 외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채무자 대신 스스로 주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또는 주계약 채무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채권자가 인정한 제3자(이하 「대체이행업자」라 한다)에게 주채무를 이행하게 하였을 때에 보증채무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3. 보증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이행업자에게 주채무를 이행시키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가비용(주채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에서 채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지불받는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써 필요하고 타당한 것을 말함)을 대체 이행업자에게 지불한다.

(보증책임기간)

제3조 보증인이 보증기간의 말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증채무는 소멸된다.

(채권자에 의한 통지)

- **제4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의 발생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주계약 위반 등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2) 채무자에게 지불정지, 파산, 화의 개시, 회사갱생 수속 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특별청산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환가 수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압류명령이 있었을 때 또는 보전차압통지가 있었을 때
- (4) 채무자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5) 채무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또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6) 주소변경 신고 태만과 같은 귀책 사유로 인해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일 때
- 2.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청부대금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3.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승낙을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려 할 때
- (2)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청부대금의 제3자에 의한 대리수령을 승낙하고자 할 때
- 4. 채권자는 주채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 또는 주채무가 소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한다.
- 5. 전 각 항에 규정하는 사실에 대하여 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통지를 하지 않아 도 된다.

(주계약의 내용 변경)

- **제5조** 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 체없이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1) 설계변경에 따르는 계약변경을 하였을 때. 단, 경미한 설계변경에 수반되는 것은 제외한다.
- (2) 청부금액을 변경하였을 때. 단, 변경예정가가 청부금액의 30%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3)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때

(공기의 변경)

- **제6조** 채권자는 공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한다. 단, 보증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2. 보증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 보증기간은 공기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증채무이행의 청구)

- **제7조** 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할 때 다음 서류를 보증증권에 첨부하여 보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2) 채무불이행의 사실 및 청구액을 입증하는 서류
- (3) 기타 보증인이 손해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증채무이행 개시 기한)

제8조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대체이행청구서를 수령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한다. 단, 이 기간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칠 수 없거나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를 종료한 다음, 지체없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한다.

(보증계약의 해약)

제9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이 보증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보증인은 채권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이 보증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보증계약의 무효)

제10조 이 보증계약의 체결시에 채권자에게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주채무의 내용 및 기타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실에 대해 채권자가 부실한 내용을 알렸을 경우 포함)에는 이 보증계약은 무효로 한다.

(양도 및 저당의 금지)

제11조 보증인은 보증증권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로부터의 청구 이외에는 설사 보증증권에 따른 채권의 양도 또는 저당이 있더라도 보증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이행을 책임지지 않는다.

(대위 등)

- 제12조 보증인이 제1조에 규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포함)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일절의 권리를 보증인에게 대위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동시에 보증인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일절의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채권자는 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에 협력하는 동시에 채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취득할 회수금액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지불한다.

(기본약관의 개칭)

제13조 보증인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이행업자에게 주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약관 중 「채무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체이행업자」로 개칭한다.

(관할법원)

제14조 이 보증계약에 관한 소송, 화해 및 조정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본점, 또는 보증증 권에 기재된 영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준거법)

제15조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본 법령에 준거한다.

하자담보 보증 특약조항

(하자담보 채무의 부담)

제1조 보증인은 이 특약조항에 따라 공공공사용 보증계약 기본약관(이하「기본약관」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상관없이 보증증권에 기재된 하자보증기간(이하「하자보증기간」이라 한다)중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기본약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제3자(이하「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하자보수 청구를 하거나,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채무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보증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하자담보채무(이하 「하자 담보채무」라 한다)의 불이행(이하 「채무불이행」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 등과 연대하여 보증증권에 기재된 하자보증금액(이하 「하자보증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자담보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하자보증채무의 소멸)

- 제2조 보증인은 채무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하자보증금 액을 채권자에게 지불함으로써 언제든지 전조에서 규정하는 보증인의 채무(이하「하자보증채무」라 한다)를 소멸시킬 수 있다.
- 2. 전항 외에 채무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보증인이 자기의 선택에 따라 전조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채무자 등을 대신하여 스스로 하자담보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또는 주계약에 의한 채무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채권자가 인정한제3자(이하 「본 특약상의 대체이행업자」라 한다)에게 하자담보 채무를 이행하게 하였을 때는 하자보증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3. 보증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약상의 대체이행업자에게 하자담보채무를 이행하 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수비용(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써 필 요하고 타당한 것을 말함)을 본 특약상의 대체이행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하자보수 청구의 통지)

제3조 채권자는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채무자 등에게 하자보수 청구를 하거나,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보증인에게 통지한다.

(하자보증 책임기간)

제4조 보증인이 하자보증기간의 말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채 권자로부터 전조에서 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하자보증채무는 소멸되는 것 으로 한다.

(특약조항의 개칭)

제5조 보증인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약의 대체이행업자에게 하자담보채무 를 이행시키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특약조항 중 「채무자 등」으로 된 부분은 「본 특약상의 대체이행업자」로 개칭한다.

(기본특약의 개칭)

제6조 이 특약조항에서는 기본약관 중 「주채무」로 된 부분은 「하자담보채무」로, 「보증채무」로 된 부분은 「하자보증채무」로, 「채무자」로 된 부분은 「채무자 등」으로 개칭한다.

(기본약관과의 관계)

제7조 이 특약조항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특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본약 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록8: 일본의 공공공사용 보증위탁계약 기본약관

(보증의 위탁)

- 제1조 채무자인 보증위탁자(이하 「보증위탁자」라 한다)는 보증위탁계약 신청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이하 「주채무」라한다)의 이행에 대하여, 귀사에게 귀사 소정의 공공공사용 보증계약 기본약관 및 특약조항(이하 「보증약관」이라 한다) 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보증을 위탁한다.
- 2. 보증위탁자는 전항의 보증위탁에 대해 귀사에게 이 위탁약관 및 특약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며 귀사에게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주채무의 성실한 이행)

제2조 보증위탁자는 주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보증채무이행 등의 방법 선택)

- 제3조 보증위탁자는 귀사가 보증약관에 규정하는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이행하거나, 보증채무를 소멸시키고자 보증금액을 채권자에게 지불하거나, 스스로 주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주계약에 따른 보증위탁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채권자가 인정한 제3자(이하 「대체이행업자」라고 한다)에게 주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2. 보증위탁자는 귀사가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소멸·경감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외에 귀사가 임의의 방법을 택하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3. 전 제2항의 경우 보증위탁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사전 통지·최고는 필요하지 않다.

(통지의무)

- **제4조** 보증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귀사에게 통지한다.
- (1) 보증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주계약 위반 또는 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할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2) 보증위탁자에 대하여 지불정지, 파산, 화의개시, 회사갱생 수속 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특별청산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 (3) 보증위탁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환가 수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압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또는 보전차압의 통지가 있었을 때(귀사에 대해 보증위탁자 이외의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담보물에 대해 강제환가 수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압류명령이 떨어졌을 때 또는 보전차압의 통지가 떨어졌을 때를 포함)
- (4) 보증위탁자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5) 보증위탁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이 밖에 보증위탁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2. 보증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귀사에게 통지한다.
- (1)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채권자로부터 하자보수청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 (2) 주계약에서의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였을 때 (인도가 불필요한 경우는 완성하였을 때)
- (3) 주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을 때 또는 주채무가 소멸되었을 때

(주계약의 내용 변경 등)

- **제5조** 보증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귀사에게 통지한다.
- (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하였을 때. 단, 경미한 설계변경에 수반되는 것은 제외하다.
- (2) 채권자로부터 보증금액의 변경요구가 있었을 때
- (3)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때
- (4) 공사의 주요 공법을 변경하였을 때
- (5) 공사목적물, 공사용 자재 또는 기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 (6) 공사시공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보증위탁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 (7) 기타 주채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2. 전항에 따라 통지한 사실을 귀사가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귀사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즉각 보증계약의 내용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또 보증료의 추가지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사의 청구에 따라 즉각 지불한다.

(조사협력 의무)

제6조 귀사가 주채무의 이행상황 및 보증위탁자의 재산, 경영 또는 업황 등에 대해 조사 하려 할 때 보증위탁자는 귀사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조사에 필요한 모든 편익을 제공한다.

(보증료)

제7조 보증위탁자는 귀사소정의 보증료를 이 보증위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불한다.

- 2. 보증위탁자는 귀사가 보증계약의 체결을 중지했을 경우, 또는 현저하게 보증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한 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보증료를 일절 반환하지 않음을 승인한다.
- 3. 귀사는 보증계약의 체결을 중지하였을 경우 보증료를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현저하게

보증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감액전의 보증료와 감액후의 보증료와의 차이에 따라 미경과 기간에 대해 일수로 계산한 보증료를 반환키로 한다.

(구상채무의 부담과 그 범위)

제8조 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소멸·경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는, 보증위탁자는 귀사에게 즉시 상환하도록하며 그 범위는 해당지출액 또는 채무부담액 외에 귀사가 지출한 날의 익일 이후 연14%의 비율에 따른(단, 연365일 일수 계산에 의함) 손해금 및 지불을 위해 소요되었던 비용, 기타 보증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사전구상)

- **제9조** 보증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귀사로부터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당연히 귀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구상채무를 지며 즉시 변제한다.
- (1) 보증위탁자에 대하여 지불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회사갱생수속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 (2) 보증위탁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환가수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압류명령이 있었을 때 또는 보전차압의 통지가 있었을 때(귀사에 대해 보증위탁자 이외의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담보물에 대해 강제환가수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차압명령이 있을 때 또는 보전차압으로서의 통지가 떨어졌을 때를 포함)
- (3) 보증위탁자가 거래금융기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4) 주소변경의 신고를 태만히 하는 등 보증위탁자의 책임이 될 만한 사유로 인해 귀사 에게 보증위탁자의 주소가 불명해졌을 때
- 2. 보증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 귀사의 청구로 귀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미리 구상채무를 지고 즉시 변제한다.
- (1) 보증위탁자가 주채무의 일부라도 이행을 지체하였을 때
- (2) 보증위탁자가 이 위탁계약 규정의 하나라도 위반하였을 때
- (3) 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4) 귀사가 보증금액을 지불하여 보증채무를 소멸시킬 때
- (5) 귀사가 보증위탁자 대신 스스로 주채무를 이행할 때 또는 대체이행업자에게 주채무를 이행케하는 경우
- (6) 귀사의 승낙없이 주계약에 따른 보증위탁자의 권리를 양도, 입질을 설정하였을 때 또 는 청부대금의 수령권한을 귀사 이외의 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7) 담보차입을 하고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차압 또는 경매수속의 개시가 있 었을 때

- (8) 연대보증인을 세웠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전항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
- (9) 기타 귀사가 채권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3. 전 제2항의 경우 보증위탁자는 귀사에 대한 구상채무 또는 주채무에 담보유무와 상관 없이 구상에 응하기로 하며 또 귀사에 대해 담보의 제공 또는 주채무의 면책을 주장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변제의 충당 순위)

제10조 보증위탁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이 귀사에 대한 채무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 및 방법에 의해 충당하더라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보증계약의 중지)

제11조 귀사가 이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위 탁자는 일절 이의를 내세우지 않고 또 보증료의 반환 이외의 청구는 하지 않는다.

(공정증서)

제 12조 보증위탁자는 귀사의 청구가 있는 때는 공증인에게 위촉하여 이 위탁약관 및 특약조항에 따른 채무에 대한 승인 및 강제집행의 승낙 또는 공정증서의 작성에 필요한 수속을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보증위탁자가 부담한다.

(청부대금채권의 양도)

제13조 보증위탁자는 주계약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청부대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다른 채무를 위한 담보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그 청구수령의 권한을 귀사 이 외의 자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귀사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한다.

(담보)

- **제14조** 보증위탁자는 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담보를 차입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데 응한다.
- 2. 귀사에게 차입한 담보에 대해, 그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에 변동이 생겼을 때, 또는 연대보증인의 파산, 또는 사망, 기타 보증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생겼을 때는 즉시 담보를 추가로 차입하거나 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한다.
- 3. 보증위탁자는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귀사가 양수하는 경우에는 이의 없이 승낙한다.
- 4. 귀사에게 차입한 담보는 반드시 법정수속에 의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및 가격 등에 의해 귀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연대보증인)

- 제15조 연대보증인은 보증위탁자가 이 보증위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이 보증위탁계약을 승인하고 보증위탁자와 연대하여 이행하는 책무를 지며 귀사의 사정에 따라 담보 또는 타보증을 변경·해제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2. 연대보증인이 전항의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대위에 의해 귀사로부터 취득한 권리가 보증위탁자에 대한 귀사의 구상권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귀사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 연대보증인은 만약 귀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귀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 3.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에 대한 보증인이고 주채무를 이행한 경우라도 전항과 같다.
- 4. 연대보증인이 귀사에 대하여 타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는 이 보증위 탁계약에 의해 변경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관할 법원)

제 16조 보증위탁자는 이 보증위탁계약에 관한 소송, 화해 및 조정에 대해서는 귀사의 본점 또는 보증위탁계약 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한다.

(준거법)

제17조 보증위탁자는 이 위탁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법령에 준거하기로 합의한다.

대체이행에 관한 특약조항

(대체이행의 특칙)

제1조 귀사 소정의 공공공사용 보증위탁계약 기본약관(이하「기본약관」이라 한다) 제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의 선택에 따라 보증위탁계약 신청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보증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채권자가 인정한 제3자(이하 「대체이행업자」라 한다)에게 이행하게 하는 경우는, 보증위탁자는 이 특약조항에 따라 대체이행업자에 의한 주계약의 승계 및 이행에 협력한다.

(대체이행업자의 구상권)

제2조 전조의 경우에 보증위탁자는 대체이행업자가 주계약을 승계하여 이행하기 위해, 대체이행업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할 금액에 대해 대체이행업자에 대한 구상채 무를 지며 즉시 변제한다.

(보전조치)

제3조 전조의 경우 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증위탁 자는 이에 협력한다.

- (1) 주계약의 공사현장에의 출입과 조사
- (2) 주계약의 공사현장의 관리
- (3) 공사현장에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주계약의 공사용자재 및 기기의 점유
- (4) 주계약에 따른 청부대금 채권의 청구권 이전
- (5) 기타 구상권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공사의 인계)

- 제4조 귀사가 채권자로부터 대체이행청구통지를 받았을 때 보증위탁자는 지체없이 주계 약공사의 설계도, 사양서, 기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 및 자료, 그리고 주계약의 공사현장(공사의 기성고부분, 공사가설물, 현장반입자재, 공사용 기기,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일절의 물건을 포함)을 확보하며, 이것을 귀사 또는 대체이행업자에게 인도하여 대체이행업자의 착공 및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2. 보증위탁자가 주계약의 공사용자재 또는 기기로서 현장 이외의 장소에 준비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
- 3. 귀사 및 대체이행업자는 보증위탁자가 주계약공사의 시공을 위해 채권자 이외의 자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청부, 자재구입, 고용, 기타 일절의 계약 및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 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단, 귀사 및 대체이행업자가 그 상대방과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 4. 보증위탁자는 제1항의 인도에 있어 인도물건의 명세를 서면으로 분명히 한다. 단, 그 서면이 보증위탁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이 아닐 때는 귀사가 적절히 작성한 서면으로 써 이에 대신한다.

(청부대금 채권의 양도)

- 제5조 보증위탁자가 기본약관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사항, 귀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던 것 또는 채권자로부터 대체이행청구가 있었음을 조건으로 보증위탁자는 채권자에 대해 보유한 청부대금 채권(전불금, 부분 지불금 또는 부분 인도에 관한 청부대금으로서 이미 보증위탁자에게 지불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귀사에 양도한다.
- 2. 전항에 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청부대금 채권은 어떠한 의사 표시없이도 당연히 귀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한다.

(청부대금의 청산)

제6조 보증위탁자는 대체이행업자가 주계약을 이행하였을 때 전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양도하였던 청부대금채권 중에서 기시공부분에 상응하는 미지불부분에서 귀사가 보증위탁자에 대해 보유한 구상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귀사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계약내용의 개시)

제7조 보증위탁자는 대체이행업자가 주계약의 승계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구하였을 때는 하청업자, 자재공급업자, 노무자 등과의 사이에 체결한 일절의 계약내용, 공사의 진행, 기타 사항을 모두 보고·설명하고 자료의 열람에 응하며 또한 관계문서의 복사본을 교부한다.

(기본약관과의 관계)

제8조 이 특약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 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록9: 일본의 전불금 보증약관

(당회사가 보증하는 채무)

제1조 당회사는 이 약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금불을 받은 청부자(이하 본칙에서 「보증계약자」라 한다)가 그의 책임이 될 만한 사유로 인하여 보증증권에 기재된 공공공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주자(이하 본칙에서 「피보증자」라 한다)가 그 공공공사의 청부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피보증자에게 전불금으로 지불한 금액(기성고불을 항 경우에는 그 금액를 합한 금액)에서 해당 공공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전불금으로 지불한금액에 기성고불을 한 금액을 합한 경우는 전불금으로 지불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보증계약자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보증책임의 시기 및 종기)

- **제2조** 당회사의 보증계약에 관한 책임은 당회사가 보증계약자로부터 소정의 보증료를 영수한 시점부터 시작되고 보증기간의 말일로 끝난다.
-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회사가 보증계약체결후 일괄해서 보증료를 납부함을 인 정한 보증계약자가 해당 보증료를 해당 보증계약체결후 일괄해서 납부하는 경우의 당회사의 해당 보증계약에 관한 책임은 당회사가 해당 보증계약자에게 보증증서를 교부하였을 때 시작된다.

(보증기간의 제한)

제3조 보증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단, 공기의 연장, 기타사유로 인해 1년을 초과하여 보증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아니하다.

(면책)

제4조 당회사는 지진, 분화, 폭풍우, 수해, 그 밖의 천재, 전쟁(선전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변, 폭동, 기타 보증계약자의 책임사유가 아닌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청부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보증금지불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지의무)

제5조 보증계약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신청서 및 소정의 부속서류의 기재 사항에 대해 진실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통지의무)

제6조 보증계약자 또는 피보증자는 보증기간 중 공공공사에 대해 당회사의 보증금지불

의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당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피보증자는 제1조의 사유로 청부계약을 해제코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뜻을 당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부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조치)

- **제7조** 보증계약자는 청부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변경(공기의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당회사는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보증계약자와 협의한 다음 보증계약을 변경한다.

(공기를 변경하는 경우의 조치)

- **제7조의 2** 피보증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회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 (1) 공기의 변경이 있었을 때
 - (2)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청부계약에 의거, 최종회계년도이외의 연도에 전불금을 지불하였을 때, 당해회계년도말의 청부대금 상당액이 당해회계년도까지의 기성고예정액에 미치지 못할 때
 - (3) 보증계약자의 책임이 될 만한 사유로 인해 공기내에 공사완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서 해당보증계약자에게 계속하여 공사를 속행시킬 때
- 2 보증계약자는 피보증자를 대신하여 前항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3 당회사가 前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보증기간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기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고 同항제2호의 경우에는 同호의 청부대금상당액이 同호의 기성고예정액에 달할 때까지 종기가 연장되고 同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료일까지 종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보증계약의 해약)

- **제8조** 당회사는 피보증자의 책임이 될 만한 사유로 인해 청부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피보증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보증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2 당회사는 보증계약자의 신청이 있고 또 피보증자가 동의하였을 때는 보증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보증료의 납부 등)

제9조 보증계약자는 전불금액을 다음표의 좌란에 든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 금액에 대응하는 동표의 우란에 든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료로서 보증계약체결 때 당회사에 납부한다. 단, 제2조제2항의 보증계약자가 일괄해서 납부하는 보증

료에 대해서는 당회사가 정하는 마감일까지의 보증료를 해당 마감일의 익일부터 그 다음달 말까지이며 당회사가 정한 날까지 당회사에 납부키로 한다.

300만엔 이하의 금액	<u>0.23</u> 100
300만엔 이상, 1,000만엔 이하의 금액	<u>0.40</u> 100
1,000만엔 이상, 2,000만엔 이하의 금액	<u>0.44</u> 100
2,000만엔 이상, 5,000만엔 이하의 금액	<u>0.45</u> 100
5,000만엔 이상, 1억엔이하의 금액	<u>0.48</u> 100
1억엔 초과금액	<u>0.5</u> 100

2 前항 단서규정에 관련된 보증계약자에 대해 당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담보제공을 청구 할 수 있다.

(보증료의 반환)

- **제10조** 당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증계약을 해약하였을 때에 한해 납부를 마친 보증료에 0.90를 곱한 금액을 보증계약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2 당회사가 보증계약자에게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구상권, 기타 채권을 보유할 때는 그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도 前항에 의해 반환할 보증료와 대등액에 의해 상 쇄하는 것으로 한다.
- 3 당회사가 보증계약자에 대해 보증료반환을 통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도 이를 수령 하지 않을 경우 그 보증료는 당회사에 귀속한다.

(보증금의 청구)

- 제11조 피보증자가 보증금의 지불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청부계약을 해제한 다음 지체 없이 보증금청구서 및 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보증증서,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서류를 첨부해서 당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피보증자가 보증기간의 말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前항의 청구를 하지 않을 때는 제1조에 규정하는 당회사의 채무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3 당회사는 피보증자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공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기위한 검사를 할 때는 해당 검사에 입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보증금의 분담)

제12조 이 보증계약에 의해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 동일청부계약에 대해 다른 보증계약이 있을 때는 당회사는 이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의 全보증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조정 및 재정)

- 제13조 당회사가 지불해야하는 보증금에 대해 당회사와 피보증자間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당사자 쌍방은 서면으로 각 1명의 조정인을 선정하여 그 분쟁을 조정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
- 2 前항의 조정인間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조정인이 협의하여 선정하는 1명의 재정인에게 이를 재정하게 해야 한다.
- 3 당회사 및 피보증자는 각각 소요된 조정비용(조정인에 대한 보수를 포함)을 부담하며 재정을 위해 소요된 비용(재정인에 대한 보수를 포함)에 대해서는 서로 양분하여 이를 부담키로 한다.

(보증금 지불의 시기)

제14조 당회사는 제11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수령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 에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전불금 용도에 대한 감사)

- 제15조 당회사는 전불금의 용도를 감사하기위해서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청부계약에 관한 서류 및 보증계약자의 사무소, 공사현장, 기타 장소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보증계약자 또는 피보증자에게 보고,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2 보증계약자는 전불금을 해당보증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할 책임을 지며 당회사가 요구하는 필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보증계약자는 전불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전불금을 당회사가 사전에 본조 제4항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중 보증계약 자가 선정하는 금융기관에 별도구좌의 보통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 4 보증계약자는 예탁금융기관에 적정한 용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지 않으면 전항의 예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 5 전불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때 당회사는 예탁금융기관에 대해 제 3항 예금의 환불중지, 기타의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6 예탁금융기관은 당회사의 위탁에 따라 제3항 예금의 용도에 관한 감사를 대행할 수 있다.

(구상 및 대위)

- **제16조** 당회사는 피보증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였을 때는 그 지불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2 당회사는 전항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동항의 금액범위내에서 그리고 피보증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보증자가 보증계약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

3 보증계약자는 당회사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불하였을 때라도 당회사의 제1항의 권리행사에 대해 해당 지불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없이 구상채무를 지는 것으로 한다.

(관할법원)

제17조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관할법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거법)

제18조 이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본법령에 준거토록 한다.

(특약조항)

보증계약에서의 피보증자가 국가인 경우는 전불금보증약관제1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사완성보증인에 대한 지불에 관한 보증조항 (당회사의 공사완성보증인에 대한 지불)

- 제1조 청부자(請負者)가 그의 책임이 될 만한 사유로 인해 보증증서에 기재된 공공공사의 청부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주자가 해당 청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그 해제를 하지 않고 공사완성보증인에게 해당 공공공사의 완성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뜻을 당회사에 통지하고 완성공사보증인이 이를 완성하였을 때는 당회사는 이 보증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가 청부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지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사완성보증인이 청부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지불키로 한다.
- 2 前항에서 규정하는 발주자의 통지는 同항에 규정하는 공공공사완성의 청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그 서면에는 해당 청구에 관련된 공사완성보증인의 상호, 명칭, 주소 및 해당청부계약은 발주자가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완성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의 기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공사완성보증인의 수익에 대한 의사표시)

제2조 공사완성보증인은 이 지불에 관한 이익을 향수(享受)코자 할 때는 그 뜻을 발주자

로부터 공공공사완성의 청구를 받은 다음 지체없이 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당회사는 前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공사완성보증인에 대하여 前조에 규정하는 지불 액(이하 「지불금」이라 한다)의 지불에 관한 증서(이하 「지불금보증증서」라 한다) 를 교부토록 한다.
- 3 공사완성보증인이 제1항의 수익에 대한 의사표시를 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내에 하지 않았을 때는 지불에 관한 이익을 향수하지 못한다.

(지불에 관한 책임의 발생 및 소멸)

제3조 이 지불에 관한 당회사의 책임은 前조에 규정하는 공사완성보증인의 수익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발생하고 공사완성보증인이 그 공공공사를 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내에 완성하지 못할 때는 소멸된다.

(지불금의 한도액 및 지불액의 산정)

- **제4조** 당회사가 공사완성보증인에 대해 지불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보증조항 제1조에 규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도록 한다.
 - (1) 전불금의 예탁잔액으로서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양도된 것이 있을 때 발주자의 의견 를 들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불금반환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다.
 - (2) 공공공사의 기성고에 준해야 하는 해당 공공공사의 가설물, 반입자재 등으로서 공 사완성보증인에게 양도한 것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의견을 들어 그에 상당하는 해당 공공공사의 기성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한다.
- 2 이 보증조항 제1조에 규정하는 공사완성보증인이 청부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前항에 기재하는 것이외의 것으로서 해당 공공공사에 대해 공사완성 보증인에게 양도된 것이 있을 때는 당회사 및 공사완성보증인은 협의하여 그 금액을 결정키로 한다.
- 3 이 보증조항 제1조에 규정하는 발주자가 지불청구를 할 수 있었던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회사는 공공공사의 기성고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전불금, 가설물 등의 양도 등)

제5조 당회사는 청부자에 대하여 그 전불금의 예탁잔액, 가설물, 반입자재 등을 공사완 성보증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기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면책)

제6조 청부자가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지불금을 얻게할 목적으로 청부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이 보증조항 제1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불의무가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

을 경우 당회사는 공사완성보증인이 그 목적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경우 등 신의에 위배되지 않고 성실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 지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지의무)

제7조 공사완성보증인은 당회사가 보증조항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 요구하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해 진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통지의무)

- **제8조** 청부자 또는 공사완성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청부계약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또는 공공공사에 대해 당회사의 보증금 또는 지불금의 지불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 그 공사완성보증인이 해당 공공공사를 완성하였을 경우의 구상에 대해 청부자에게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또는 담보물건을 제공토록 하였을 때 또는 청부자로 부터 이미 제공되었거나 또는 제공을 약속받은 담보물건에 변동이 생겼거나 또는 이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이를 처분코자 할 때
- 2 당회사는 청부자 및 공사완성보증인이 다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前항의 규정에 위반하 였을 때 그 위반이 없었다면 당회사가 이 보증조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위반으로 인해 취득할 수 없게 된 금액을 지불금 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그 금액의 지불을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증계약의 해약)

- **제9조** 당회사는 발주자의 책임이 될 만한 사유로 인해 청부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 및 공사완성보증인의 동의없이 보증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2 당회사는 청부자로부터 보증계약의 해약에 관한 신청이 있거나 또 발주자 및 공사완성 보증인이 동의하였을 때는 보증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지불금의 청구)

제10조 공사완성보증인은 지불금의 지불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청부계약에 관련되는 공공공사를 완성한 뒤에 지체없이 지불금청구서, 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및 청부자에 대한 구상관계자료를 작성하고 이에 지불금보증증서, 공사인도증명서,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불금의 지불 시기)

제11조 당회사는 前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수령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지불금을 지불키로 한다. 단, 조사를 위해 특히 시일을 요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사완성보증인과 협의하여 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 및 재정)

제12조 당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지불금에 대하여 당회사와 공사완성보증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정 및 재정에 대해서는 당회사가 지불할 보증금에 대해 당회사와 발주자間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용도의 감사)

제13조 공사완성보증인이 전불금의 예탁잔금을 양도받았을 경우 당회사는 해당 예탁잔금에 대해 전불금의 경우에 준하여 용도를 감사한다.

(대위권)

- 제14조 당회사는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지불금을 지불하였을 때는 그 지불금액한도내에서 또한 공사완성보증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완성보증인이 청부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취득한다.
- 2 공사완성보증인은 지불금을 영수하였을 때는 당회사가 취득하는 前항의 권리를 보전하고 또는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당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 3 공사완성보증인은 당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래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청부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 담보를 제공할 것 그리고 이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 4 당회사는 공사완성보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그 위반이 없었다면 당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에서 그 위반으로 인해 취득할 수 없게 된 금액을 지불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금액의 지불을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상액을 초과한 지불금의 반환)

제15조 공사완성보증인은 청부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불금을 수령하 였을 때는 그 초과금액을 당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공사완성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16조 공사완성보증인이 공공공사 완성을 청구받은 후 공사완성보증인의 책임이 될 만 한 사유로 인해 청부계약이 해제되어 당회사가 발주자에게 보증금으로서 지불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불하였을 때는 당회사는 그 초과 지불한 금액의 지불을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칙

중간전불금에 관한 보증조항

(적용범위)

- 제1조 당회사가 전불금보증을 한 공공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중간전불금의 보증료 납부에 대해서는 본칙의 규정에 상관없이 다음 조에서 정하기로 한다.
 - (1) 예산결산 및 회계령 임시특례(소화21년 칙령 제558호)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장 대신(大藏大臣)과 각 성청(省廳)의 장(長)과의 협의에 의거 국가가 당초의 전불금에 추가해서 행하는 중간전금불
 - (2) 건설대신이 승인한 중간전금불

(보증료의 납부)

제2조 보증계약자는 중간전불금 보증을 받고자 할 때는 중간전불금액에 0.065/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증료로써 당회사에 납부키로 한다.

특칙의 2

공공공사 계약 보증에 관한 특약조항 (이 특약조항에 의해 보증하는 채무)

제1조 당회사는 이 특약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공사의 청부자(이하 이 특약조항에서 「보증계약자」라 한다)가 공공공사의 청부자계약에 관련된 계약의 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보증계약자 간에 해당 청부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대신하는 담보로써의 보증을 하는 특약(이하 이 특약 조항에서 「계약보증특약」라 한다)을 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발주자(이하 이 특약조항에서 「피보증자」라 한다)가 본칙 제1조의 청부계약의 해제를 하였을 때는 계약보증 특약에 관한 보증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해당 청부계약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특약조항에서 「특약보증금」이라 한다)을 보증계약자에 대신하여 피보증자에게 지불한다.

(계약보증특약의 변경)

- **제2조** 보증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회사에 통지하여 계약보증 특약의 내용에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 (1) 청부금액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해 계약보증특약에 관련되는 보증금액의 변경이 필요할 때
 - (2) 공기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해 보증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때.
- 2 당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계약보증 특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보증계약자의 요청이 있고 피보증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 (2) 피보증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피보증자의 승인이 있었을 때

(특약보증료의 납부)

제3조 보증계약자는 계약보증특약에 관련되는 보증금액을 다음표의 좌란에 있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에 대응하는 同표의 우란에 있는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보증특약에 관련된 특약보증료로써 본칙 제9조 제1항의 보증료납부와 아울러 당회사에 납부한다.

300만엔 이하의 금액	<u>0.45</u> 100
300만엔 이상, 1000만엔 이하의 금액	<u>0.72</u> 100
1,000만엔 이상, 2,000만엔 이하의 금액	<u>0.79</u> 100
2,000만엔 이상, 5,000만엔 이하의 금액	<u>0.81</u> 100
5,000만엔 이상, 1억엔 이하의 금액	<u>0.86</u> 100
1억엔 초과 금액	<u>0.90</u> 100

2 본칙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은 전항의 특약보증료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본칙 제10조제2항 중 「제16조제1항」으로 된 것은 「이 특약조항제6조에서 준용하고 본칙 제16조제1항」으로 내용을 변경한다.

(특약보증금의 청구)

- **제4조** 피보증자는 특약보증금의 지불을 청구할 때 청부계약을 해제한 다음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당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특약보증금 청구서
 - (2) 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당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3) 계약보증 특약에 관련된 보증증서
 - (4)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

2 본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前항의 청구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1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특약조항 제1조」로 변경한다..

(이행상황의 조사)

제5조 당회사는 청부계약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청부계약에 관한 서류 및 보증계약자의 사무소, 공사현장, 기타 장소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보증계약자에게 보고,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칙규정의 준용)

제6조 본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 본칙 제12조, 본칙 제14조 및 본칙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은 계약보증 특약에 대해, 본칙 제13조의 규정은 국가 이외의 피보증자에 관련된 계약보증 특약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이러한 규정중 「보증료」로 되어 있는 것은 「특약보증료」로, 「보증증서」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보증특약에 관련된 보증증서」로,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특약보증금」으로, 본칙 제2조 중 「보증계약에」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보증 특약을 부한 보증계약으로」로, 「보증계약 체결후」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보증특약을 부한 보증계약으로」로, 본칙 제5조 중 「보증계약의」로 되어있는 것은 「계약보증특약을 부한 보증계약의」로, 본칙 제12조 중 「보증계약」로 된 것은 「계약보증특약을 부한 보증계약의」으로, 본칙 제14조 중「제11조」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보증특약을 부한 보증계약」으로, 본칙 제17조 중 「보증계약」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 특약조항 제4조제1항」으로, 본칙 제17조 중 「보증계약」으로 되어있는 것은 「계약보증특약을 부한 보증계약」으로 변경한다.

저자소개

이 의 섭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졸업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뉴욕주 총무처(New York State Depart. of Civil Services) 근무

서울투자자문 자문역 역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역임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논문>

"An Analysi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hoice," <u>Journal of Urban</u> <u>Economics</u>, 38, 236–251,1995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소득계층별 효과분석" <u>대한교통학회지</u>, 1995.,2.

건설공사 연대보증인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6. 12. 등